



일 잘하는 실력 국회

입법·정책보고서

2019. 12.

제40호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김도희(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2019. 12. 31.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동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내 용
주제 선정	2019. 6. 4.
초고 작성기간	2019. 10. 10. ~ 2019. 12. 2.
초안 검토	외교안보팀 이승현 팀장
검토위원회 의결	2019년 12월 4일 화 오전 9시 30분 - 검토위원: 조기열 정치행정조사실장 유웅조 정치행정조사실 심의관 유인규, 장영환, 이승현, 박영원 팀장
외부전문가 자문	1. 전문가: 조원득(국립외교원) 2. 요청일: 2019.12.4. 3. 답변일: 2019.12.5.
간행물 심의위원회 의결	2018년 12월 18일(화) 오후 3시 -위원장: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위 원: 조기열 정치행정조사실장 이신우 경제산업조사실장 김 준 사회문화조사실장 이복우 기획관리관

요 약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체결로 형성된 이래 지난 66년 간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66년간 유지되어온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해왔다.

동맹 초기에 한국은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주로 시설과 부지 등 간접적 지원을 하였으나 1991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이후부터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을 시작하였다.

1991년부터 2019년 현재 총 10차에 걸쳐 방위비분담협정이 체결되는 동안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은 초기에 비해 제도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하였다. 특히, 방위비분담금의 합리적 증액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고안되었고, 제9차와 제10차 분담협정에서의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측이 방위비분담금의 배분과 군사건설 사업 등의 시행에 더 많이 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별협정 개선 합동 실무단’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틀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양국 간에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제도개선과 국회의 민주적 관여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구체적으로 첫째, 방위비분담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분담금 증액과 산정방식의 합의, 분담금 증액 관련 쟁점들, 분담금 증액률의 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둘째,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방위비분담금의 결정방식, 방위비분담금의 지급방식, 유효기간, 협정의 제도개선 관련 논의, SOFA 개정 등과의 연계 등의 내용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의 민주적 관여와 관련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제한, 협정의 유효기간, 정보공유 문제, 국회의 관여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제1차부터 제10차까지의 방위비분담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속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둘째,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점검하여 방위비분담금 결정 및 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셋째, 국회의 민주적 관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국회의 민주적 관여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협상·체결·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조약체결절차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의 예산심사 전에 합의안이 제출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및 국회와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할 것,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차 례

□ 요약

I. 서론 / 1

II.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개관 / 4

1. 동맹이론과 방위비분담 4
2.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법적 성격 7
3.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연혁 10
 - 가. 협정의 배경 10
 - 나. 협정의 회차별 특징 12
4. 해외 주요국의 방위비분담 사례 비교 16
 - 가. 일본과 독일의 방위비분담금 개관 16
 - (1) 일본의 방위비분담금 개관 16
 - (2) 독일의 방위비분담금 개관 17
 - 나.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제도 비교 19

III.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 21

1.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21
 - 가. 분담금 증액과 산정방식에 대한 합의 21
 - 나. 분담금 증액 관련 쟁점 25
 - 다. 분담금 증액률의 결정 27
2.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 29
 - 가.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29

(1)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에 의한 배분	29
(2) 증액형과 소요형의 비교	31
나. 방위비분담금 지급 방식	32
(1) 방위비분담금 지급방식의 변천	32
(2) 미집행 분담금의 누적과 현물지원 원칙의 예외	33
(3) 현물 지원 원칙의 강화	35
다. 유효기간 관련 논의	35
라. 협정의 제도개선 관련 논의	37
(1)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개선 사항	37
(2)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개선 사항	39
(3) 추가 검토 사항	40
마. SOFA 개정 등과의 연계	41
(1)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SOFA 개정 연계	41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주체	41
3. 국회의 민주적 관여	43
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제한	43
나. 협정의 유효기간과 국회의 통제	45
다. 정보 공유 문제	46
라. 국회의 관여	47

IV. 정책적 시사점 / 48

1. 증액요구에 대한 사전 전략 수립 및 대응	48
2. 방위비분담 관련 제도 개선	49
3. 국회의 민주적 관여 강화	51
가. 조약체결절차법(안) 마련	51

나. 국회의 예산심사 전 합의안 제출	55
다. 정보 공유 강화	56
라. 국민 의견 수렴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 강화	56

V. 요약 및 결론 / 59

참고문헌 / 61

부록 / 63

표 차례

[표 1] 한미동맹의 변천과 방위비분담	6
[표 2]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과 국회의 동의 여부	9
[표 3] 제1차 -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개요 및 특징	14
[표 4]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제도 비교	19
[표 5]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분담 운용구조	20
[표 6] 제2차~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전년대비 첫해 인상률	22
[표 7]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 상 방위비분담금 관련 내용	23
[표 8]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2015)	24
[표 9] 제1차~제10차 방위비분담금 기준년도 분담금 규모와 증액률	28
[표 10]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09-2018	30
[표 11]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제도개선 요약	38
[표 12]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제도개선 요약	39
[표 13] 제1차~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제출 현황	43
[표 14] 2019년 방위비분담금 예산 확보 현황	45
[표 15] 제1차 -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국회 심의 현황	47
[표 16] 조약체결절차법(안) 추진 경과	54

그림 차례

[그림 1]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연도별 분담금 총액, 1991-2019	21
---	----

I. 서론

-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체결로 형성된 이래 지난 66년 간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었음. 이를 바탕으로 한미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해왔음
- 이러한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66년간 유지되어온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해왔음
- 이와 같은 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반환·경비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¹⁾ 제5조는 한국은 미국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외 미군 운영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미국의 재정적자 및 국방비 감축이 맞물리면서 미국 내 한국의 방위비분담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었음
-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 SOFA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이하 ‘방위비분담협정

1)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동 부속문서」(Agreed understandings to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related agreed minutes)임.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라는 약칭으로도 불림

’2)을 체결하였고 이때부터 한국의 본격적인 방위비분담이 시작되었음

- 초기에는 인건비, 군사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지원 항목을 분담하다가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2009)부터 인건비,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 항목으로 조정되었음

□ 1991년부터 총 10차에 걸쳐 방위비분담협정이 체결되었고, 2019년 현재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양국 간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쟁점은 방위비분담금의 규모 즉, 총액의 증감에 대한 것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면서도 그 구체적 산정기준이나 항목별 분담액을 모르는 채로 증액을 요구받아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또한 방위비분담협정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헌법 제60조제1항)으로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심사권이 제약되는 등 실질적 통제가 작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이 보고서는 제1차부터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검토하여 그동안의

2)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이며, 흔히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또는 방위비분담협정으로 약칭함

- 한미 간 방위비분담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그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방위비분담 협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 이 보고서는 제1차부터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정문·교환각서·「이행약정」 등 공식문서들과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및 국회의회의록 등 국회 공식기록과 자료들을 분석하였음³⁾

3) 1차부터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정문·교환각서·이행약정 등 공식문서들과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요약·정리한 자료는 이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되었음

II.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개관

1. 동맹이론과 방위비분담

□ 한미동맹은 ‘후견-피후견’(Patron – Client)관계⁴⁾로 시작되었으나 냉전의 종식,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겪으면서 동반자 관계(partnership)로 그리고 포괄적 전략동맹(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 발전해왔음([표 1] 참조)

○ 일반적으로 ‘후견-피후견’ 관계와 같은 비대칭동맹에서는 ‘안보(security)-자율성(autonomy) 교환(tradeoff)’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안보의 제공, 즉 방위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경우 강대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는 동맹 내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⁵⁾

○ 한편, 약소국의 경제발전은 약소국이 국익 추구를 위한 더 많은 자원과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동맹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게 됨

- 따라서 약소국은 동맹에 의한 자율성 침해를 쉽게 수용하지 않게 됨과 동시에 군사력 증강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등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비대칭적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⁶⁾

- 이 경우 강대국은 더 이상 공공재로서의 안보 제공을 거부하고 그에 대한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한편, 약소국이 무임승차(free-ride)하지 않도록

4) 비대칭 동맹의 전형적인 형태로 약소국인 피후견국이 강대국인 후견국으로부터 일방적인 안보지원을 받으며, 그 대신 정치적 자율성을 양보하게 되는 ‘안보-자율성’의 교환이 발생함

5) Olson Jr, Mancur, and Richard Zeckhauser. 1966. *An Economic Theory of Alliances*. California: The Rand Corporation.

6) Heo, Uk and Terence Roehrig. 2018. “Development Power Theory: The South Korean Case,” *Pacific Focus* 33(1): 111-140.

강압적 지도력(Coercive leadership)⁷⁾을 발휘하여 약소국이 동맹에 기여 (contribution)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

- 한국은 1991년에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초기의 ‘후견-피후견’관계에서 벗어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동맹형성 초기 미국은 한국에 상당한 군사-안보지원을 하였으나, 한국의 발전과 자국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 1970년대 이후 무상 군사원조를 중단하였고, 1990년대 초부터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게 되었음
 - 초기 미국의 원조는 군사원조계획(Military Assistance Programme)⁸⁾에 따라 진행되었고, 1970년대 이후 해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⁹⁾ 및 차관을 통한 지원을 제공하였으나, 1987년 이후에는 사실상 종료되었음
- 1991년 최초 1,073억 원¹⁰⁾이었던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 현재 1조 389억 원으로 약 10배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에서 미국 측은 현재 한국의 분담금(1조 389억 원)에서 약 5배 이상 증가한 약 47억~50억 달러(약 5조 8천억 원)이상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¹¹⁾

7) Snidal, Duncan. 1985. “The Limits of Hegemonic Stability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39(4): 579-614.

8) 미국의 군사원조계획(MAP)은 무상, 차관, 공동부담의 형태로 약소국이 외부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사훈련프로그램 및 장비를 제공함

9) 미국정부가 군수물자, 장비, 군사훈련프로그램 등을 외국 정부에 판매하는 것이 대외 군사판매(FMS)임. FMS를 통한 판매에서는 미군 물자 조달가격으로 무기와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약소국에 유리한 방식임

10) 1차 방위비분담협정 당시 한국의 분담액은 1억 5천만 달러였고,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1,073억 원임

- 그러나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협상(2019.12.17.-18.)¹²⁾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 협상대표는 그동안의 조정·타협을 통해 현 요구 금액은 50억 달러는 아니라고 밝혔으나,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완벽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¹³⁾

[표 1] 한미동맹의 변천과 방위비분담

시기	한국정부	미국정부	동맹 정체성	특징 및 비고
1953년 ~ 1987년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해리 S. 트루먼 (Harry S. Truman)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Dwight D. Eisenhower) 존 F. 케네디 (John F. Kennedy) 린든 B. 존슨 (Lyndon B. Johnson) 리처드 닉슨 (Richard M. Nixon) 제럴드 포드 (Gerald R. Ford) 지미 카터 (James E. Carter) 로널드 레이건 (Ronald W. Reagan)	후견 - 피후견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후 동맹형성 • 한국 권위주의 군사정부 집권 시기 • 전형적 비대칭 동맹 • 안보-자율성 교환 • 미국의 대한국 군사·안보지원 • 기지제공 등 간접지원 위주의 비용분담
1988년 ~ 1997년	노태우 김영삼	조지 H. W. 부시 (George H. W. Bush) 빌 클린턴 (William J. Clinton)	동반자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전종식 • 한국 민주화 및 경제발전 • 1987년 FMS 차관 종료 •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완료 • 제 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1991-1993) • 제 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1994-1995) • 제 3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1996-1998)

- 11) “Trump hikes price tag for US forces in Korea almost 400% as Seoul questions alliance,” CNN, 2019.11.15.
- 12)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는 9월 24-25일(서울), 제2차 회의는 10월 23-24일(하와이), 제3차 회의는 11월 18-19일(서울), 제4차 회의는 12월 3-4일(워싱턴)에서 개최되었음
- 13) “미 요구한 미군 순환배치 비용 1조원 육박..정찰기-사드도 변수,” 동아일보, 2019년 12월 20일자

1998년 ~ 2007년	김대중 노무현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George W. Bush)	동반자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맹의 정체성 및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상이 • 미군기지 이전 및 전작권 전환 합의 (2012년 4월 17일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4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1999-2001) • 제 5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02-2004) • 제 6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05-2006) • 제 7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07-2008)
2008년 ~ 2012년	이명박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Barack H. Obama)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동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한미정상회담, 전작권전환 연기 합의(2015년 12월 1일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09-2013)
2013년 ~ 2017년 3월	박근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Donald J. Trump)	포괄적 전략동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기지 이전 •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 2014년 한미정상회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
2017년 5월 ~ 현재	문재인	도널드 트럼프	포괄적 전략동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기지 이전 • 대북정책 공조 • 대북한 제재 유지 • 방위비 분담액 증액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9)

자료: 김도희,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및 쟁점」, 「입법·정책보고서」, Vol.20, 국회입법조사처, p.8 수정·보완

2.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법적 성격

□ 우리 「헌법」 제 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제처는 방위비분담협정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으로 판단해왔음

- 예를 들면, 2019년 제 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해 법제처는 “이 협정안은 우리나라가 이 협정의 유효기간(2019.1.1.~12.31.)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면서(협정안 제1조), 2019년 지원분을 1조 389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 바(협정안 제2조),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협정안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음¹⁴⁾
- 한편, 방위비분담협정 외에 협정의 이행을 위해 별도로 체결된 이행약정, 각종 교환각서 및 세부사업 이행을 위한 합의서 등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 예를 들면,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경우 방위비분담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나, 제도개선 교환각서, 이행약정¹⁵⁾, 군수분야시행합의서는¹⁶⁾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음([표 2] 참조)

14)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검토보고서」(2019.3.), 외교통일위원회, pp.37-38

15) 다만,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이행약정」에서 예외적 현금지원 조항이 삽입되었으나, 국회비준동의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되었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되어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경우 「이행약정」이 비준동의의 필수서류가 아니었음에도 함께 제출된 바 있음

16) 예를 들면,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이행약정」에 따르면 양국은 현물군사건설사업 이행은 별도의 현물건설 이행합의서(in-kind construction implementing agreement)에 따르고, 군수분야의 세부사업의 이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행합의서(Logistics Cost-Sharing implementing agreement)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표 2]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과 국회의 동의 여부

구분	내용	국회동의	당사자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pecial Measures Agreement)	방위비분담금 관련 일반사항	국내법률과 동일한 효력, 국회비준 필요	(한) 외교부(국방부) (미) 국무부
제도개선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방위비분담협정 관련 제도개선사항	국회동의를 필요 없으나 비준시 첨부 서류	(한) 외교부(국방부) (미) 국무부
이행약정 (Implementation Agreement)	방위비분담협정 실행을 위한 세부내용(인건비, 군사건설, 군수 지원 분야)	국회동의 불요	(한) 국방부 국제정책관 (미)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군수분야 시행합의서 (Implementing Agreement)	방위비분담협정 및 이행약정 실행을 위한 군수분야 세부내용		(한) 국방부 군수관리관 (미)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

자료: 홍중현,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이행합의 개정을 위한 법제분석 지원」, 『KLRI ISSUE PAPER 14-21-④』, 한국법제연구원, 2014, p.6.

- 또한, 1999년 발효된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부터는 그동안 우리의 현물지원에 대한 과세로 인해 협정상 약속된 금액을 전액 지원받지 못한다는 미국 측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협정문에 ‘면세조항’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 6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¹⁷⁾

17) 1998년 6월 2일 및 6월 19일에 교환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개정)」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에서 우리 정부는 “기지불 된 세금과 미집행 잔액 260만 불을 주한 미군에 보전하며 1998년까지의 특별협정에 따른 분담금의 여하한 부분에 대하여도 과세나 미집행으로 인하여 부족액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과 “특별협정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현물지원의 일부로 대한민국 정부가 구매하는 물품·보급품·장비 및 용역 일체는 대한민국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또는 세후액 기준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문안을 차기 특별협정에 삽입할 것”을 약속하였음

- 구체적으로,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 제2조 하단은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또는 세후액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어떤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액은 비용분담 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조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은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⁸⁾
- 마지막으로 방위비분담협정은 서문에서 “주한 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¹⁹⁾
- 따라서 방위비분담협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과 마찬가지로 조약으로 볼 수 있음²⁰⁾

3.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연혁

가. 협정의 배경

18) 「제6차 방위비분담협정 검토보고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5.6.), p.12

19) 제1차 -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경우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매 회차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0) 「제6차 방위비분담협정 검토보고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5.6.), p. 11

- 한미양국은 동맹초기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²¹⁾와 SOFA 제5조²²⁾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외 미군의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해왔음. 그러다가 1974년 이후 한국은 부분적으로 직접 비용 분담을 시작하였고, 1991년 마침내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비용 분담을 시작하게 되었음
- 예를 들면, 1974년 한국은 미국의 전쟁예비탄약(WRSA 탄)²³⁾ 저장비용을 부담하였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창설되면서 우리 측 운영비용을 부담함과 동시에 연합방위력증강사업(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s)²⁴⁾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하였음²⁵⁾

-
- 21)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여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22) 한미 SOFA 제5조 제 1항은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제 2항은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삼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3) WRSA(War Reserved Stock For Allies) 탄이란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우방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저장하고 있는 예비 탄약을 의미함
 - 24)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한미연합 방위전력 증강을 도모하기 위해 주한미군 제기한 소요를 미 국방부의 승인 하에 우리 국방부가 시설물을 건립해 제공하는 것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공식적으로 체결하기 이전부터 지원되다가, 제8차 방위비분담 협정부터 군사시설 지원에 통합되면서 삭제되었음
 - 25)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2003.7., p.11-5 참조;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 외무통일위원회, pp.3-4.

- 그 이후 미국 측은 국내 경제적 사유와 의회의 압력으로 인해 장비정비, 전 쟁물자 관리 등의 군수지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게 되었고, 1990년에는 한국인 노무비· 군사시설비 등 현지 발생 경비의 일부 분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음
- 이에 따라 양국은 1991년 “미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 인의 노무비 및 기타 다른 경비를 일부분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음²⁶⁾

나. 협정의 회차별 특징

- 1991년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이 체결된 이래 2019년까지 총 제10차 방위 비분담협정이 체결되어 현재 시행중이며, 2019년 12월 31일 유효기간이 종 료되는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
- 제1차 -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 이르기까지 방위비분담을 위한 제도는 초기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음([표 3] 참조)
- 첫째, 1991년 최초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체결될 당시에는 방위비분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본문에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측이 지원액을 결정하여 미국 측에 통고하는 형식이었음. 그러나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부터는 사전 합의를 통해 결정된 협정 개시년도의 분담금을 본문에 명시하고, 기간 내 증 액률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부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액하 되 물가상승률은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규정하였음

26)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 (1991.2), 외교통일위원회, p.2.

- 둘째, 최초 ‘일부’ 분담에서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부터는 주한미군 원화지출 경비에 대한 ‘공정한 분담’으로, 제5차 협정부터 인건비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항목으로 구체적인 방위비분담금 지원항목이 협정문에 명시되었음
 -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부터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이 삭제되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에 포함되어 실시됨
- 셋째, 방위비분담금의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인건비 현금지급, 군수비용분담 현물지급,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은 현금과 일부 현물로 지급하다가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부터 현물지원 원칙이 강화되면서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현물지급으로 전환되고, 마침내 2011년부터는 설계 및 감리비용 12%를 제외한 전체 88%의 경우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됨
- 넷째, 미집행 지원금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도록 하였으나,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부터 미집행 지원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 협정문에 명시되고,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도 미집행 지원분 최소화를 위한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노력할 것이 규정되고 있음
- 다섯째,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가 교환되었고,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는 제도 개선 합동실무단이 구성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양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여섯째,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이 협정문 본문에 명시됨

[표 3] 제1차 -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개요 및 특징

협정	유효기간	초년도 총액(원화)	서명 (발효)	주요 내용
제1차	3년 (1991-1993)	1,073억 원	1991.1.25. (199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전문 + 4개조 최초, 방위비분담의 법적 근거 마련 고용원을 고용하기 위한 경비의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비의 일부 부담(제1조) 회계연도마다 한국이 부담할 경비를 미국에 통고(제2조) 협약체: SOFA합동위원회(제3조)
제2차	2년 (1994-1995)	2,080억 원	1993.11.23. (199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 7개조 고용원을 위한 경비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 부담(제1조) 1995년까지 주한미군 원화지출경비²⁷⁾의 3분의 1 수준으로 방위비분담금 증액 합의(제2조)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에 의해 지출 분야에 배분(제4조) 협약체: SOFA합동위원회,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체(제5조) 상호합의하에 협정 개정(제7조)
제3차	3년 (1996-1998)	2,475억 원	1995.11.24. (199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전문 + 6개조 처음으로 협정문 본문에 분담금 명시(제2조) 1995년 분담금(미화 3억불) 기준으로 1996-1998년간 매년 10%씩 분담금 증액, 현금 및 공동사업형태로 지원(제2조) 방위비공동분담위원회에 의한 배분(제3조) 협약체: SOFA공동위원회,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제4조) <p>※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해 방위비분담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²⁸⁾ 교환(1998.6.2. 및 6.19.교환, 6.19. 발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분담금 3.99억불 → 미화 7,500만 불+2천33억2백만 원 조정 - 면세조항 차년도 협정에 포함할 것 합의

27) 원화지출경비는 미군 현역 및 군속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현지발생 경비를 의미함(제3조)

28) 공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임

II.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개관

제4차	3년 (1999-2001)	4,411억 원	1999.2.26. (199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전문 + 5개조, 이행지침 • 1999년도 분담금 기준, 향후 2년간 분담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및 실질 국민총생산 변동 반영 결정, 현금과 현물로 지원(제2조) • 현물지원 제공에 대한 면세조항 추가(제2조) • 협의체: 합동위원회,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조정)
제5차	3년 (2002-2004)	6,132억 원	2002.4.4. (200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전문 + 5개조, 이행약정 • 인건비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항목으로 구성(제1조) • 전년도 분담금의 8.8%와 전전년도의 물가상승률(총생산 디플레이터)을 반영(제2조) • 총 분담금에 대한 원화비율 88% 명문화(제2조) • 군사건설비 일부 현물지원 확대(제2조)
제6차	2년 (2005-2006)	6,804억 원	2005.6.9. (200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전문 + 5개조, 이행약정 • 2005년 분담금 6,804억원, 2006년 분담금 동결(제2조)
제7차	2년 (2007-2008)	7,255억 원	2006.12.22. (2007.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전문 + 5개조, 이행약정 • 2008년 분담금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 반영 증액(제2조)
제8차	5년 (2009-2013)	7,600억 원	2009.1.15. (2009.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전문 + 7개조, 이행약정,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²⁹⁾ •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연합방위력증강사업 삭제)(제1조) • 2010년 이후,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금액 합산, 물가상승률 4% 초과인됨(제2조) •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현물원칙 강화(2009년부터 현물지원 전환, 2001년부터는 설계 및 시공감리 비용 제외 전면 현물지원(제3조)) • 미집행 현물지원분은 차년도 이월(제3조) • 협정종료 시 이행되지 않은 건설 사업은 계속 이행(제5조)
제9차	5년 (2014-2018)	9,200억 원	2014.1.11. (2014.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전문 + 7개조, 이행약정,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³⁰⁾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³¹⁾ • 협정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채택, 협정과 동일일 발효(제1조) • 2015년 이후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의 증가금액 합산 결정, 상승률 4퍼센트 초과인됨(제2조) •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채택, 협정 동일일 발효(제3조) • 미집행 지원분 최소화 노력 강조(제3조) • 협정종료 시 이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및 건설사업은 계속 이행(제5조)
제10차	1년 (2019)	1조 389억 원	2019.3.8. (20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전문 + 9개조, 이행약정 • 인건비 분담은 현금,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군사건설은 현금 및 현물(설계 및 시공감리)(제3조) • 미집행 지원분 최소화를 위한 절차수립 포함 노력(제3조) •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 증진 노력(제5조) • 제도개선 합동실무단 구성(제6조)

자료: 제1차-10차 방위비분담협정, 외교부 자료 및 외교통일위원회 심사검토보고서 참조, 필자 정리

4. 해외 주요국의 방위비분담 사례 비교

가. 일본과 독일의 방위비분담금 개관

(1) 일본의 방위비분담금 개관

□ 일본은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미일 SOFA³²⁾의 범위에서 1978년부터 주둔군 등 근로자의 복지비용 등을 지원하고, 1979년부터 제공시설 정비비 등을 지원하였음

○ 이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³³⁾ 체결을 통해 노무비(1987년도부터), 광

29) 공식명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on In-kind Contribution of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under the Agreement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SOFA)임

30)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on System Improvements fo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SOFA)가 공식명칭임

31) 공식명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on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SOFA)임

32) 공식명칭은 「일본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정보장조약 제6조에 의거한 시설 및 구역과 일본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第六条に基づく施設及び区域並びに日本国における合衆国軍隊の地位に関する協定)」임

33) 공식 명칭은 「일본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정보장조약 제6조에 의거한 시설 및 구역과 일본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4조에 대한 새로운 특별 조치에 관한 일본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第六条に基づく施設及び区域並びに日本国における合衆国軍隊の地位に関する協定第二十四条についての新たな特別の措置に関する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協定)」

연료 등(1991년도부터), 훈련이전비(1996년도부터) 등을 지원하고 있음³⁴⁾

- 구체적으로 조정수당 등 8개 수당과 기본급 등 43품목 및 공용을 위해 조달하는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및 난방 등 연료비용, 그리고 일본 측의 요청에 따른 주일미군의 훈련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음³⁵⁾
- 2019년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2004년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비분담률은 74.5%로 집계되었으나, 일본정부는 86.74%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본의 방위비분담에 대한 공통적 합의가 없다고 밝힘³⁶⁾
- RAND 연구소의 2013년 보고서는 일본이 매년 17억 - 21억 달러를 직접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음³⁷⁾
- 일본 정부는 2013년 방위비분담금은 1, 860억 엔(약 17억 64만 달러, 2019 USD), 2019년 분담금은 1,974억 엔(약 18억 487만 달러, 2019 USD)으로 집계함³⁸⁾

(2) 독일의 방위비분담금 개관

- 독일의 경우 1961년 - 1975년까지는 미국과 상계지불협정(Offset) 체결을 통해 미군 주둔비용 상당의 무기나 채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고, 그 이후 1982년 4월 체결된 「전시주둔국지원협정」(Wartime Host Nation Support Agreement)³⁹⁾을 통해 주둔미군에 대한 지원을 하였음

34) 일본 방위성 웹사이트(https://www.mod.go.jp/j/approach/zaibeigun/us_keihi/keii.html)

35) 일본 방위성 웹사이트(https://www.mod.go.jp/j/approach/zaibeigun/us_keihi/gaiyo.html)

36) Chanlett-Avery, Emma et. al. *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L33436, 2019.10.1.,p.25.

37) Lostumbo, Michael J. et al., "Host-Nation Support and U.S. Payments to Other Countries," in *Overseas Basing of U.S. Military Forces: An Assessment of Relative Costs and Strategic Benefits*, 131-66. RAND Corporation, 2013

38) 일본 방위성 웹사이트(https://www.mod.go.jp/j/approach/zaibeigun/us_keihi/suii_table_23-31.html)

- 독일 통일 이후에는 NATO 공동비용(common funding) 분담과 NATO군의 독일주둔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통해 미군 주둔비를 지원하고 있음
 - NATO 회원국으로서의 공동비용(common funding) 분담으로 민간예산, 군사예산, 안보투자프로그램(NSIP, NATO Security Investment Programme)을 분담하는데 민간예산은 독일연방 외무부, 군사예산과 NSIP예산은 독일 국방부에서 예산편성과 지출을 담당하고 있음
 - 「NATO SOFA 보충협정」(NATO SOFA Supplementary Agreement)⁴⁰⁾에 따르면 NATO 군이 독일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군대를 파견한 국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독일 정부는 NATO동맹국 군인의 독일 주둔에 의해 발생하는 특정한 초래비용(Folgekosten) 즉, 인건비, 행정비용, 지원 및 보조금, 투자금 등을 일부 부담하고 있다고 알려짐⁴¹⁾
- 독일의 경우 NATO 공동예산 분담 부분 외에 직접적인 비용분담에 대해 공개된 최근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움
- NATO 공동예산(2018.1.1.~2019.12.31.)은 민간예산 2억 3,680만 유로(약 2억 6,312만 달러), 군사예산 14억 3,190만 유로(약 15억 9,106만 달러), 안보투자프로그램 예산 7억 유로(약 7억 7,780만 달러)로 구성되는데, 독일은 이 중 14.7635%를 부담하여 미국(22.138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음⁴²⁾

39) 전시주둔국지원협정은 전시에 주둔국 영토 내에서 주둔국이 외국군에게 군수 병참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이 NATO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분담을 요구하면서 체결되었으나, 1990년 독일통일이후 협정이 종료되었음

40) <https://www.pref.okinawa.jp/site/chijiko/kichitai/sofa/documents/germany02-2.pdf>

41) 박휘락, 「주요 미군주둔 국가(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13, pp.105-106

42) NATO 웹사이트 참조(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67655.htm)

- 이 외에 주둔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은 2009년 기준 9억 9,500만 달러(2019 USD 기준)로 알려지고 있으나,⁴³⁾ 최근 분담금에 대한 공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움

나.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제도 비교

- 한국·일본·독일은 모두 SOFA를 근거로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방위비분담협정(SMA)을 체결하여 주둔미군을 지원하고 있음([표 4] 참조)
- 한편, 독일은 별도의 방위비분담협정 없이 주로 NATO에 대한 분담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표 4]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제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독일
지원근거	SOFA	직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비(건설+운영비) • 기지주변민원해결을 위한 시설건설정비 • 국유/사유지 임대료 • 기지이전 비용 • 주일미군에 의한 공무피해보상 • 복지비용 등 노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 기지이전 비용분담 • 주함미군부대 실직자 생활안정지원
		간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과 부지제공 • 면세, 사용료 감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제공 • 면세혜택
	S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군사건설비(연합방위력 증강사업 포함) • 군수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원 인건비 • 수도, 전기, 가스료 • 훈련장소 이동 및 재배치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A없음
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총족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총족형
제공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인건비 및 설계·감리비용) • 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 또는 현금 • 일본정부 직접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O 분담금(직접지원) • 그 외 99% 간접지원

자료: 박휘락, 「주요 미군주둔 국가(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연구」, 『국회에 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13, p.111 인용 및 필자 수정

43) Lostumbo, Michael J. et al., “Host-Nation Support and U.S. Payments to Other Countries,” in *Overseas Basing of U.S. Military Forces: An Assessment of Relative Costs and Strategic Benefits*, 131-66. RAND Corporation, 2013

-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의 경우 독일과 일본은 항목별 검토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소요충족형인 반면, 한국은 총액을 결정 후 필요한 항목에 배분하여 사용하는 총액형 방식임
- 제공방식의 측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현금+현물’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운용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음
 - 즉, 일본의 경우 현금 지급의 경우에도 일본정부가 직접 집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 측에 현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 한국의 경우 미국 측이 직접 집행하는 분야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경우 미군이 노무자를 직접 고용하므로, 현금이 지원되나, 일본은 일본정부에 의해 고용되므로 인건비의 경우에도 미군에 현금이 지원되지 않음
 - 또한 군사시설의 경우도 주한미군의 경우 사업의 설계, 감리 및 선정을 미군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5] 참조)

[표 5]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분담 운용구조

분담 구분	운용방식	
	한국	일본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 직접고용 • 미군 노무관리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정부 직접고용 • 일 정부 노무 관리
군사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사업 선정·설계·감리 • 한: 계약, 공사 집행 • 미국 측 주도적 운용(S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설계 등부터 주도 • 일 측 주도적 운용(SOFA)

자료: 백재욱, 「일본의 방위비분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국가전략』 제23권 제3호, 2017, p.147 참고, 필자 재정리

Ⅲ.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 1991년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을 시작으로 현재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으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져왔으나 방위비분담금의 지속적 증액 및 국회의 민주적 관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가. 분담금 증액과 산정방식에 대한 합의

-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일부” 부담이 “공정한 부담”으로 변경되면서 부터 분담금 규모의 적정성에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⁴⁴⁾ 방위비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매 협정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연도별 분담금 총액, 1991-2019

(단위: 십억 원)



자료: [표 3] 참조, 필자 작성

44)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000 위원은 “공정한 부분으로 변경됨으로써 우리의 분담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하여 분담액의 증가를 우려하였음

- 실제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부터 현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전년대비 첫째 분담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감축을 이유로 전해보다 - 8.9% 감액되었던 제6차 방위비분담협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했으며, 최저 2.5%(제8차) 증가부터 최고 25.7%(제5차)까지 증가한 적이 있음([표 6] 참조)

[표 6] 제2차~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전년대비 첫째 인상률

협정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증액률	18.2	10.0	8.0	25.7	-8.9	6.6	2.5	5.8	8.2

자료: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2019.4.), 외교통일위원회, p.16

- 매해 분담금 증액에 대한 갈등이 컸던 이유는 양국 간 분담금 산정을 위한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임
- 그동안 미국 측은 일방적으로 비인적주둔비(non-personnel stationing cost; NPSC)를⁴⁵⁾ 기준으로 한국의 방위비분담률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증액을 요구해왔음
 -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미국 측의 비용 증가율보다 낮은 점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는데,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측 분담률은 2017년 처음 50%대로 평가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40%대에 머무른 것으로 평가되어왔음([표 7] 참조)

45) 비용분담은 크게 세금, 토지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간접지원과 미군의 지출 비용을 직접 지원해주는 직접지원이 있음. 직접지원 중 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국에서의 지출비용을 ‘비인적주둔비(non-personnel stationing cost)’라 칭하는데, 그동안 미국은 비인적주둔비의 50%를 부담해줄 것을 요구해왔음

[표 7]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 상 방위비분담금 관련 내용

연도	분담금	분담률	주요내용
2012	8,125억원 (743백만달러)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한국 측 분담률을 50%까지 올릴 것을 요구 • 2013년에는 물가상승률 4%만 반영해서 인상 예정
2013	8,360억원 (765백만달러)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상원군사위원회 보고서는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군비지출 상승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함 • 2008-2012년 사이에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42백만불이 증가한 반면 미국의 비인적주둔비는 500만불이 증가했음
2014	9,200억원 (867백만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투명화(한국 국방부의 계약승인 및 주한미군의 연간보고서 제출) • 한국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의 기지 이전비 전용이 2004년 협약의 위반이라고 지적함 • 2013년 보고서와 동일 내용 생략
2015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보고서와 동일내용 생략
2016	9,320억원 (832백만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보고서와 동일내용 생략
2017	9,440억원 (821백만달러)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인적 주둔비의 50% 분담 • 한국이 97.4백만불을 기지 이전비 및 건설비로 지급(한국 국회 비판 언급)

자료: 미의회조사국 한미관계보고서(CRS Report, U.S. - South Korea Relations) 연도별 발췌정리; 김도희,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및 쟁점」, 「입법·정책보고서」, Vol.20, 국회입법조사처, p.29에서 재인용

- 그러나 이는 NPSC의 상세 구성항목에 대해 우리 정부가 확인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우리 측 분담률이 자의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구체적으로 이러한 분담률 산정은 방위비분담금에 의한 지원 외에 한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약 2조 4,548억 원과 기지 이전사업 관련하여 지원한 약 2조원 이상(2015년 기준)의 한시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표 8] 참조)

[표 8]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2015)

구분	분류	세분	항목	총액(억 원)		
지속적 지원	직접 지원	국방예산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3,490), 군사건설(4,148), 군수지원(1,682)	9,320	
			기타	미 통신선·연합 C4I 체계 사용	154	
		카투사 병력지원(기본급, 피복비 등 운영지원비)		98		
		기지 주변 정비 비용(Magnum 탄약고 정비)		82		
		부동산 지원		82		
		국방예산 외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비용(주변 도로사업, 평택 지원)		14,542	
			공무집행 피해배상		1	
					합계	24,279
		간접 지원	기회비용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		7,105
				KATUSA 기회 비용		936
	훈련장 사용 지원			236		
	면제 및 감면비용		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세금 면제		1,135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 감면		91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 면제		86	
			합계	9,589		
			총계	33,868		
한시적 지원	직접 지원	국방예산	기지이전 특별협정(YRP-LPP)	7,169		
			기지 이전사업 관련 비용(반환기지 토양오염 정화)	84		
		국방예산 외 지원	기지 이전사업 관련 비용(반환 공여 구역 토지 매입)	13,442		
				총계	20,695	

자료: 「2018 국방백서」 (2018.12.31.), 국방부, p.285.

나. 분담금 증액 관련 쟁점

- 지난 제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당시부터 미국 측은 기존의 인건비, 군수지원 비용, 군사건설비 항목 외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해왔음. THAAD의 운용비용 및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비용 포함 문제를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음
- 당시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THAAD의 전개 및 운영·유지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비용을 이유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⁴⁶⁾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THAAD 비용 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여 논란이 되어 허버트 맥매스터(Herbert McMaster) 당시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진화한 사례가 있으나⁴⁷⁾ 실제 제10차 협정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음
 - 또한 미국 측이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전략자산⁴⁸⁾ 전개비용의 경우도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에 한정

46) 「사드(THAAD) 바로알기」, 국방부 정책자료집, 14쪽
 (http://www.mnd.go.kr/cop/pblicitn/selectPublicationUser.do?siteId=mnd&componentId=14&categoryId=105&publicationSeq=742&pageIndex=1&id=mnd_040501000000)

47) “Trump’s demand Seoul pay for THAAD will test ties as Moon presidency looms,” Reuters, 2017.4.28.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ump-southkorea-analysis/trumps-demand-seoul-pay-for-thaad-will-test-ties-as-moon-presidency-looms-idUSKBN17U13O>)

48) 전략자산이란 적의 지휘부, 군사기지, 산업시설 등 전쟁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물을 일거에 타격해 초토화시켜 전쟁 초기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말하며,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B-1B, B-52 등 전략폭격기 등이 있음

되므로 원칙적으로 방위비분담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

- 그러나 미국은 지난 제10차 협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을 분담하라는 요구를 해왔으며, 방위비분담금 항목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전략자산 전개비용이 포함된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과 함께 체결된 「특별조치협정을 위한 이행약정」 제5절제2항에서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에 따라,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한국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합의하여 일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새로운 항목 설정을 통한 증액 요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리 측 입장은 기존과 동일함
- 즉, 이미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때 유효기간 1년에 1조 389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1조원이 넘는 분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도 미국 측은 한국의 현 분담금에서 약 5배 이상 증가한 약 47억~50억 달러(약 5조 8천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미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이 금액 정당화를 위해 기존 주둔비 위주의 방위비분담 항목 외에 ‘준비태세(readiness)’ 비용으로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고 함⁴⁹⁾
 -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회의

49) “Trump hikes price tag for US forces in Korea almost 400% as Seoul questions alliance,” CNN, November 15, 2019.

(11.18.-19.) 및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회의(12.3.-4.)는 총액의 대
규모 인상을 둘러싼 양국의 현격한 견해차로 인해 결렬되었음

- 제5차 회의(2019.12.17.-18.) 종결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 협상대표
는 그동안의 조정·타협을 통해 현재의 요구 금액이 50억 달러는 아니라고
밝힌바 있음
 - 다만, “한국 방어와 직결되는 진짜 비용(real costs)을 반영해 SMA(방위
비분담협정)의 틀을 다시 짜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대표는 기존의 SMA 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짐⁵⁰⁾

다. 분담금 증액률의 결정

- 방위비분담금의 증액률을 우리 경제 규모에 맞추려는 노력은 회차를 거듭
할수록 지속되었음([표 9] 참조)
- 제3차 방위비분담협상 때만 해도 전년도 분담액에서 일률적으로 10%를 인
상하도록 하였으나,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부터는 우리 경제 추이에 맞도록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국민총생산 변동에 따라 증가율을 조정하도록 하였음
-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부터는 전년도 분담금의 8.8%를 상수로 두어, 연도별
편차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증가율은 전전년도의 GDP 디플레이터(종합물가
상승률)를 반영하여 결정하였음

50) “미 요구한 미군 순환배치 비용 1조원 육박..정찰기-사드도 변수,” 동아일보, 2019년
12월 20일자

- 또한 제7차와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 때는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제8차부터는 적용물가상승률에 4%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적정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음

[표 9] 제1차~제10차 방위비분담금 기준년도 분담금 규모와 증액률

차수	첫 해 분담금규모	첫 해 증액률(%)	유효기간 내 증액기준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 (1991-1993)	1.5억불 (1,073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1.5억 불로하고, 1995년 3억불을 목표로 매년 분담금 협상 실시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 (1994-1995)	2.6억불 (2,080억 원)	18.2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 (1996-1998)	3.3억불 (2,475억 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분담금 기준 10%증액 합의 (물가상승률 7% + 실질증액분 3%) ※ 최초 합의에 의하면 1998년 분담금이 3.99억불이 되어야 하나, IMF사태로 인한 환율급등으로 3.14억불로 조정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 (1999-2001)	2,575억 원+1.41억 불 (4,411억 원)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2001년 분담금은 실질 GDP 변동률과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CPI)을 적용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 (2002-2004)	5,368억 원+0.59억 불 (6,132억 원)	2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내 인상률은 전년도 분담금의 8.8%와 전전년도 GDP 디플레이터만큼의 증가액을 합산하여 결정
제6차 방위비분담협정 (2005-2006)	6,804억 원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내 동결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 (2007-2008)	7,255억 원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분담금은 2007년 분담금에 2006년 물가상승률(2.2%) 반영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 (2009-2013)	7,600억 원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총액에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전전년도)를 반영하여 총액 인상 • 인상을 상한선 4%를 적용, 인플레이션에 의한 과도한 인상 방지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2014-2018)	9,200억 원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총액에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전전년도)를 반영하여 총액 인상 • 인상을 상한선 4% 적용,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2019)	1조 389억 원	8.2	—

자료: 제1차 -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방부 자료 참고, 필자 재정리

2.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

가.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1)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에 의한 배분

- 방위비분담금의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협정 본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 제4조에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에 의해 지출 분야에 배분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양국이 우선 총액에 합의하고, 이후 협의를 통해 분담항목에 배분하는 소위 ‘총액형’ 분담 결정방식임을 알 수 있음
-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는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국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정책기획참모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어느 일방의 요청 시에 회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의 항목별 배분이 양국의 합의하에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있는 상황임
 - 국방부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3회의 회합이 있었는데, 2009년 2회, 2014년 3회, 2015년 2회 회합이 있었고, 그 외에는 모두 1년 1회의 회합이 있었고, 2013년에는 회합이 없었음
 - 주요 회의 내용은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배정논의가 주를 이루며, 그 외에 군사시설·군수분야 이월 최소화 노력 및 효율적 집행방안 협의 등과 제9차 협정 비준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협의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표 10] 참조)

[표 10]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09-2018

연도	일자	회의 개최 결과
2009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배정 논의 2009-2013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 서명
	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배정 논의 군사건설·군수분야 이행 방안 협의 군사·군수분야 이월 최소화 노력 합의
2010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도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배정 논의 및
2011	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도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배정 논의 인건비 월별 집행보고서 제출 요구 군사건설 설계도서 조기 제공 방안 협의
2012	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 방위비분담 항목별 배정 논의 2013년 예산 편성안 설명 군사건설·군수지원 효율적 집행 방안 협의
2014	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차 협정 발효를 위한 이행약정 체결 협의(6.18. 서명) 2014년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배정에 대한 검토·평가 예산 집행을 향상을 위한 협조 요청 제9차 협정 제도개선에 따른 분야별 이행 협의 제9차 협정 비준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협의
	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배정에 대한 검토·평가 예산 집행을 향상을 위한 협조 요청 제9차 협정 제도개선에 따른 분야별 이행 사항 점검 제9차 협정 비준 후속조치 사항 협의
	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차 협정 제도개선에 따른 분야별 이행 사항 점검 제9차 협정 비준 후속조치 사항 협의
2015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잠정 배정액에 대한 검토·평가 제9차 협정 제도개선에 따른 분야별 이행 사항 점검 제9차 협정 비준 후속조치 사항 협의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최종 배정에 대한 검토·평가 제9차 협정 제도개선에 따른 분야별 이행 사항 점검 제9차 협정 비준 후속조치 사항 협의
2016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최종 배정에 대한 검토·평가 제9차 협정 비준 후속조치 사항 협의 현금 미집행액 점검
2017	8.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최종 배정에 대한 검토·평가 ‘한국 계약업체’ 정의 개정 관련 협의 방위비분담금 중 LPP 사용금액 관련 문의
2018	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배정액 검토 및 토의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2019.12.3.)

(2) 총액형과 소요형의 비교

-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은 총액을 협상을 통해 결정하여 제공하고, 이를 필요한 항목에 배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는 실제 주둔 비용 소요액을 파악하여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일본의 ‘소요충족형’ 또는 ‘항목형’ 결정방식과 자주 비교되며 변경 필요성이 지적되어왔음
- 그동안 총액형을 유지한 근거는 예측하기 힘든 한반도의 안보상황으로 인해 미군 측의 군사적 소요제기에 따라 급격한 총액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으나⁵¹⁾, 총액형의 경우에는 분담금의 사용계획부터 집행결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분담금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총액형을 유지하면서도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음
- 예를 들면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 「이행약정」에 분담금의 항목별 자금 배분 현황을 한국 국방부에 제공할 것을 규정한다거나,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방위비 분담금 항목별 배정액 추산에서부터 결정까지 한미 간 공동으로 철저한 검토·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국방장관 - 주한미군사령관의 추가 심의를 실시하는 것 등이 그러함

51)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대체토론과정에서 “미군 총주둔비용의 구체적 내역 파악여부와 구체적 소요 내역을 파악한 후에 총 분담금 규모를 협상을 할 용의는?”이라는 질문에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은 “총 분담비용에 대하여는 개략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소요내역 파악이후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상방식은 우리의 분담금을 줄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음

-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전용사례⁵²⁾에서와 같이 항목 배분에 있어 재량이 발휘될 여지가 많아 전용의 가능성이 높으며, 협정문 본문에는 총액과 항목 외의 다른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유효기간 내에 증액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총액의 증액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환경 및 소요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배분에 대한 관여를 높인다고 해도 애초에 총액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문제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소요형 또는 항목형 제도로 바뀌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총액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행보고서에 대한 감사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⁵³⁾

나. 방위비분담금 지급 방식

(1) 방위비분담금 지급방식의 변천

-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 때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공동사업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한 이래, 주로 인건비는 현금으로 군수지원은 현물로, 그리고 군사시설지원은 현금과 현물로 지원해왔음

52) 제7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 심사 과정에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LPP 협정에 의해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2사단 이전비용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음. 이에 당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대체토론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의 LPP 협정 전용은 협정 위반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방위비분담협정과 LPP는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 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첨부됨

53)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법안소위원회 부대의견,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체토론 및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대체토론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 초기에는 현금지원 비율이 더 높아서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 때는 군사시설 지원의 5%만 현물지원이었고,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 때는 10%만 현물지원이었으나, 현금 지급으로 인한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현물지원 원칙이 더욱 강조되었음
- 이에 따라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현물 비율을 높이기 시작하여 2011년부터는 설계·감리비용 12%를 제외하고는 전면 현물로 전환하도록 하였음⁵⁴⁾

(2) 미집행 분담금의 누적과 현물지원 원칙의 예외

-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의 누적 문제가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어, 2009년 이전에 발생한 현금 미집행액 약 7,000억 원이 미 은행 커뮤니티뱅크⁵⁵⁾에 예치되어 연간 300억 원 이상, 2000년 이래 약 3천억 원 이상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⁵⁶⁾
-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집행과정에서 현금 미집행액이 우선 사용되도록 미국 측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며,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음⁵⁷⁾

54)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건설비 지원체계는 제8차 협상(2009년 이후)부터는 현물지원 체계로 변경되었으며, 현금지급비율은 95%(5·6차협정), 90%(7차협정), 70%(8차협정, 2009년), 40%(2010년), 12%(2011년) 순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음(국방부 제출자료, 2017.8.11.)

55) 커뮤니티뱅크(Community Bank)는 해외 주둔 미군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 프로그램(DoD-owned banking program)으로 SOFA 15조상의 초청계약자인 민간사업자(Bank of America)가 위탁 운영 중임

56) 2014년 4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됨

57) 국방부 제출자료(2017.8.11)

- 또한 한미 양국이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이행약정」에서 군사건설사업의 현물지원에 대한 예외 규정에 합의하였으나, 국회 비준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다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논란이 되었음⁵⁸⁾
- 이에 대해 당시 국회는 외교부에 이 문제와 관련 국회보고 은폐여부, 이면합의 여부, 현물지원 원칙 후퇴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였음
- 상기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외교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의혹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전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 국회 설명·보고 노력을 경주하고, 제10차 협상에서 현물지원 원칙이 유지되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음⁵⁹⁾

58)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제9항에 따라, 특정 군사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함. 당시 본 논란을 제기하였던 OOO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위 사항 중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진행해야하는 특정 군사건설사업은 미군의 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로 미 국가정보국(NSA)이 정한 ‘첩보통신지침(Intelligence Community Directive) 705’의 적용을 받는 특급보안 시설들이기때문에 미국의 보안인가 업체들에만 건설계약권이 주어진다고 주장함. 이로 인해, SCIF 건설비용을 굳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로 지원해야할 정당성 문제와 더불어 군사건설비 중 설계·감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물로 지급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두어야한다는 점과 한국 업체가 참여할 수도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협정의 비준·동의 당시에 국회에 이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음

59) 외교부 제출자료(2018.11.13.)

(3) 현물 지원 원칙의 강화

- 이러한 방위분담 지급방식에 대한 논란은 현재는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개선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임
- 첫째,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당시 크게 문제가 되었던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 현금지원 가능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현물지원 원칙을 유지하면서 미 측이 非 한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였음(「이행약정」 제4절제4호 다항)
- 둘째, 현금으로 지급된 설계·감리비에서 미집행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음년도 현금배정에서 삭감하는 대신 현물 지원으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미집행 현금의 축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제4절제2호 가항-다항)
- 셋째, 미집행 현물지원 이월의 경우도 예산지출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만 이월하고, 그 외에는 연말까지 공공요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여 이월요건을 강화하였음(제5절제7호)

다. 유효기간 관련 논의

- [표 3]에 따르면 제1차 - 제10차 협정기간 동안 유효기간은 짧게는 2년(2차, 6차, 7차)부터 3년(1차, 3차, 4차, 5차)과 5년(8차, 9차)으로 다양하였으나,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제10차 협정의 경우에는 1년으로 결정되었음
- 유효기간의 경우 장기 또는 단기의 경우 모두 장단점이 있어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는 힘들. 다만,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유효기간에 대한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장기간의 유효기간은 예측 가능한 예산 운용이 가능하여 안정성이 높고, 빈번한 방위비분담 협상이 야기하는 방위비 인상 요구 및 양국 간 긴장

유발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해도 5년 동안 방위비분담 협상이 없으므로 국회가 분담금에 대한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고, 5년의 기간 동안의 환경 변화에 대해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예를 들면, 5년 동안 사정이 변화하여 감액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분담금은 증액률에 따라 매년 예정대로 증가할 수밖에 없음
 - 방위비분담협정에 개정 관련 조항이 존재하나, 사실상 양국이 모두 타당한 이유라고 확인한 경우 외에는 수정이 어렵다고 볼 것임. 양국 간 방위비분담협정 제10차에 이르는 동안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단 한차례만 방위비분담협정이 수정된 사례가 있음⁶⁰⁾
 - ◆ 1997년 말 발생한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해 한미 양국은 제3차 분담협정 개정에 합의하였으며, 1998년에 지급할 총액인 3.99억불 대신 “1.75억불과 2천33억2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담액을 조정하였음
 - ◆ 또한, 1998년은 예외적으로 미 달러화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항공기 및 지상장비, 합의각서에 의거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탄약정비활동, 차량 지원 및 공동사용기지의 전쟁예비물자 장비정비 지원 사업에 한하여 지원금은 1 미불당 907.6원의 환율로 정산”할 것을 규정하였음

60) 1998년 6월 2일 및 6월 19일에 교환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개정)」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이 공식명칭임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정해진 원칙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제9차 협정의 경우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 및 주한미군의 예산 수립·운용 측면에서의 예측 가능성 제고, 동맹국간 빈번한 분담금 협상에 따른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음⁶¹⁾
 - 제10차 협상의 경우에도 우리 측은 3-5년의 유효기간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측이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방위비분담의 원칙을 정립할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1년으로 결정되었음
 - ◆ 다만, 제10차 협정 본문 제7조에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라고 규정하여 양방의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음

라. 협정의 제도개선 관련 논의

- 방위비분담협정 제도가 회를 거듭하는 동안 제도 운영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제9차 및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통해 상당부분 개선책이 마련되었음

(1)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개선 사항

-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는 총액형 결정방식에 대한 보완과 한국의 참여 및 방위비분담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음([표 11] 참조)

61)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 외교부 보도자료, 2014년 1월 12일자

- 구체적으로 분담 항목별 배정 및 소요 검토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지원 건설의 실질적 협의 체제를 수립하는 등 방위비분담 지원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또한, 군수비용 분담 사업의 업무 방식 및 절차를 개선하여 한국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 분담에 관한 투명성 제공 및 정보 공유 증진을 통하여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표 11]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제도개선 요약

구분	개선 내용	기대효과
1. 분담 항목별 배정 및 소요검토에 대한 조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배정액 추산에서부터 결정까지 한미 간 공동으로 철저한 검토·평가 실시 • 필요시 국방장관-주한미군사령관과 추가 심의 실시 • 우리정부의 예산 편성주기를 감안 배정액 결정 시점을 한 달 정도 앞당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담금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는지에 대한 검토·평가 가능 • 한미 간 협의 결과가 반영된 예산안 국회 제출
2. 대한민국 지원건설의 실질적 협의 체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측이 사업 목록만을 사업설명서와 함께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제출, 이를 기초로 1년간에 걸쳐 실무급~장관급의 협의를 통해 구체 사업 계획을 사실상 공동 수립(필요시, 국방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간 이견 해결) • 전년도-현행년도-추후년도의 건설 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미측이 중장기 건설사업 계획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 투명성 확보/이월액 등 집행 부진문제 해소에 기여 • 중장기 건설사업도 한미 간 협의
3. 군수비용 분담 사업의 업무방식 및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 분야의 상설협의체를 신설, 행정절차 간소화, 발주 및 대금 지불 추적·모니터링 도입 등 구체조치를 마련해나가기로 합의 • 군수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계약 업체”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무늬만” 한국업체의 참여 차단
4. 인건비 분담에 관한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담금 배정액 협의 시 인건비 분야부터 우선 검토 및 평가 • 보다 상세한 인건비 집행 내역 제공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투명성’ 확보
5. 정보 공유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간 항목별 배정 검토 결과 국회 보고 • 「방위비분담금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 「현금 미집행액 상세 현황보고서」를 새로이 작성, 동 보고서 및 여타 집행결과 보고서 내용을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 투명성’ 확보

자료: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2014.4.), 외교통일위원회, p.13

(2)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개선 사항

-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이행약정」은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및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를 대체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는 군사건설, 군수비용 지원, 인건비 분담 전 항목에서 현물지원 체제 강화, 미집행 현금 발생 및 누적방지, 한국 측 참여 및 권한확대, 우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권익 보호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향후 중장기 제도개선을 위한 합동실무단 구성에 합의 하였음([표 12] 참조)

[표 12]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제도개선 요약

구분		개선 내용	기대효과
군사건설	예외적 현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적 현금지원조항 삭제(설계·감리비 외 전면 현물지원) • 비한국업체 조건부 허용 - 미국 군사적 소요/ 가용현금 부족/ 상호 협의 및 합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지원 체제 강화
	설계·감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내(현금지급분) 미집행분 발생 시 차년도 현금 지원분 삭감 - 삭감분은 현물지원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집행 현금 발생·누적 방지
	사업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추가사업 제안가능 • 미, 군사건설 5개년 계획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측 참여 및 권한 확대
	집행 상 한측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과정 전반에 걸쳐 우리 국방부 관여 확대 	
군수비용	미집행분 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 조건부 허용 - 연내 계약완료 또는 12월 1일까지 입찰 공고된 사업만 이월 허용 - 연말까지 미집행분은 군수지원 내 공공요금으로 지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과 합치도모
	집행상 한측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사업목록 및 수정 사항 매분기 제출 • 미, 한국 업체 자격 요건 증빙 서류 매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측 모니터링 강화
인건비	인건비 분담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한 철폐/75% 이상 지원 노력 의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안정성 제고
	한국인 근로자 복지·안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 상 양국 관계당국의 복지·안녕 증진 노력의무로 격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권익 보호 중요성 강조
제도개선 합동실무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건설 소요형 전환 포함, 분담협정의 중장기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특별협정 개선 합동실무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사항 상시적 협의

자료: 외교부;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2019.4.), 외교통일위원회, p.14에서 재인용

(3) 추가 검토 사항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9차와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통해 그동안 문제 제기되었던 제도 부분의 개선에 상당부분 진척이 있었음. 그러나 개선된 제도의 실질적 시행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에서 「대한민국 지원 건설에 대한 조정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총 20회, 2015년 총 11회, 2016년 총 9회, 2017년 총9회가 개최되어 2014년을 제외하고는 월 1회 개최에도 못 미친 것을 알 수 있음⁶²⁾
- 또한 이 회의는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 등 현안 협의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나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회의가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향후 제도의 실질적 시행에 대한 검토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 다른 예로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이행약정」 제8조에 의해 규정된 ‘특별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의 경우 연 2회 소집을 통해 현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을 목적으로 신설되었음
 - 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 6월과 9월 2회 소집되어 방위비분담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 향후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고, 차기 협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2) 국방부 제출 자료(2018.2.)

마. SOFA 개정 등과의 연계

- 우리가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은 한미동맹 간의 다양한 현안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방위비분담협정 또는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그러한 문제를 같이 거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1)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SOFA 개정 연계

- 방위비분담협정이 SOFA의 특별조치라는 것에 착안하여 이 두 문제를 결부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부대의견에서는 “정부는 방위비 분담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에 관한 한·미간의 교섭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이 개정내용에 우리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방위비분담협정과 SOFA 개정문제를 연계하고자 하였음⁶³⁾
 - 이와 관련하여 2001년도에 개정된 한미 SOFA는 형사재판관할권, 미군 범죄자의 신병인도, 환경조항, 세관검사 등에서 일본·독일의 SOFA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있음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주체

-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연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고, 이에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에 환경조항이 신설된 바 있음

63) 당시 외무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이 협정에 의한 방위비분담을 집행함에 앞서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에 관한 한·미간의 합의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함”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하였음.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1995.11.), 외무통일위원회, p.5

- 구체적으로 제5차 방위비분담금협정 「이행약정」에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중요하다. 주한미군사는 환경시설을 건축하는 데 군사건설비를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4.나.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
- 이 외에도 최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발표하면서 국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비용을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음⁶⁴⁾
- 그동안 주한미군기지의 반환이 결정되었으나, 환경오염 복원 비용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지 못해 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9년 현재 반환 결정된 총 80개소 중 54개가 실제로 반환되었음⁶⁵⁾
- 한편, 2019년 12월 11일 개최된 제200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부평·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의 조속한 반환이 합의되고, 오염 정화 책임,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음⁶⁶⁾

64) “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 50억 달러 방위비인상에 대항카드 될까”, 중앙일보, 2019년 9월 1일자.

65)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반환된 54개 기지에 대한 조사결과 국내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한 기지는 25개소로 이 중 23개소의 오염정화작업이 완료되었고, 1개소(캠프 캐슬)는 정화작업이 진행 중으로 이들에 대한 실복원비용은 약 2,194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현재까지 오염된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복원비용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와 우리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었으며, 주한미군과의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공개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반환 예정인 26개소 정화비용은 환경부의 환경조사 이후에 알 수 있으며, 정화비용 부담주체는 SOFA 합의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제출자료. 2018.7.31.; 2019.10.29.)

66) 「우정 200,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다-제200차 소파(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 외교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11일자

- 이번에 조속 반환이 결정된 기지는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룡,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쉴라 사격장으로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이미 폐쇄되었으나, 반환이 지연되고 있던 곳이었음
- 언론 보도에 따르면 1,100억 정도로 추산되는 정화비용은 우리정부가 먼저 부담하고, 향후 미국 측 분담액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함⁶⁷⁾

3. 국회의 민주적 관여

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제한

- 국회의 심의 관련 쟁점으로 가장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고 있는 문제는 비준동의안이 예산심사기간을 넘겨 제출되어, 실제 분담금 예산이 그 법적 근거인 방위비분담협정의 비준 없이 예산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 54조제1항의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임
-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이후부터는 비준동의안의 제출이 지연되어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제출되고 있음([표 13] 참조)

[표 13] 제1차~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제출 현황

차수	서명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국회 비준동의	발효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1991-1993)	1991.1.25.	1991.1.25.	1991.2.8.	1991.2.21.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1994-1995)	1993.11.23.	1993.12.7.	1993.12.17.	1994.1.1.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1996-1998)	1995.11.24.	1995.11.24.	1995.12.1.	1996.1.1.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1999-2001)	1999.2.26.	1999.3.8.	1999.3.8.	1999.1.1.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2002-2004)	2002.4.4.	2002.4.9.	2002.4.19.	2002.1.1.
제6차 방위비분담협정(2005-2006)	2005.6.9.	2005.6.9.	2005.6.29.	2005.1.1.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2007-2008)	2006.12.22.	2006.12.29.	2007.4.2.	2007.4.2.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2009-2013)	2009.1.15.	2009.1.15.	2009.3.2.	2009.3.5.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2014-2018)	2014.1.11.	2014.2.7.	2014.4.16.	2014.6.18.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2019)	2019.3.8.	2019.3.12.	2019.4.5.	2019.4.5.

자료: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2019.4.), 외교통일위원회, p.30;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발효일 필자 추가

67) KBS NEWS, 2019년 12월 11일자

- 즉, 국회는 국방부가 전년도 방위비분담금에 준하여 제출한 예상금액을 사실상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 간 협정 체결 없이 심사하고, 확정하게 되는 것임
 - 예를 들면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경우 2006년 12월 29일에야 협정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따라서 국방위원회의 2007년도 국방부 예산안 예비심사는 전년도 분담금 6,804억 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음
 - 이로 인해, 협상 타결 후 나머지 451억 원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예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증액되어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음⁶⁸⁾
- 2020년 예산의 경우에도 제10차 협정의 당시 합의금액인 1조 389억 원이 우선 예산으로 편성되어 2019년 11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의결 및 12월 1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쳤음
 - 그러나 제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019년 12월 17-18일 개최되었던 제5차 회의가 종결되었음
- 또한 협정마다 분담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는 예산의 이·전용 문제와 미지급분 증가 문제도 발생시킴
- 예를 들면, 제10차 협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2019년 예산 9,784억 3,400만원이 확정되어 합의금액 1조 389억 원에 비해 604억 6,600만원 부족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국방부는 타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표 14] 참조), 일부 부족한 부분은 미지급 잔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밝히고 있음

68)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2007.3.), 통일외교통상위원회, p.16.

[표 14] 2019년 방위비분담금 예산 확보 현황

(2019.10.31.기준, 단위: 억원)

구분	예산액(A)	변경(B)			예산현액 (C=A+B)
		이용	전용	조정	
총계	9,784	62	60	0	9,906
인건비	3,780	0	1,127	98	5,005
군사시설개선	4,527	62	△967	△98	3,524
군수분야	1,477	0	△100	0	1,377

주: 이용(62억원): 7136(국방법무지원) → 5131(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전용(60억원): 5132(주한미군 기타분담금) → 5131(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국방부소관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서」, 국방위원회, 2019.11. p.209에서 재인용

나. 협정의 유효기간과 국회의 통제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각 각 장단점이 있으나 특히 국회의 입장에서는 장기의 유효기간 동안 분담금에 대한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즉, 현재 국회는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바탕으로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새롭게 체결될 때에만 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장기의 유효기간의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국회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 대체토론에서 5년의 유효기간으로 국회의 실질적 통제권이 제한되므로, 비준동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으며, 같은 대체토론에서 “5년의 유효기간이 국회의 통제권을 제한하고, 주한미군 감축 및 신속기동군으로의 전환에 따른 분담금 조정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음⁶⁹⁾

69)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2009.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pp.35-38.

다. 정보 공유 문제

- 방위비분담금 협정문 본문에는 분담금의 총액만 명시되고, 각 항목별 금액배분은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이의 시행은 별도의 「이행약정」이나 시행합의서를 통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실질적으로 국방부 결산자료를 제출 받는 것 외에 방위비분담금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기가 쉽지 않음⁷⁰⁾
- 따라서 총액형으로 결정되는 현재의 방위비분담협정 하에서 국회가 미군사령부에 의한 방위비분담금 이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드문 상황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와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이행약정」에서 ‘정보 공유 증진’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상기 항목의 내용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협의결과 즉, 방위비분담금의 항목별 배분 내용을 국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 및 그 밖의 정기 집행 보고서상의 정보를 군사 보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정보공유 제도가 실제 빈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⁷¹⁾
 - 예를 들면,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한 국회 공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총 5건이 있었고, 상기 보고서

70) 이러한 문제는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됨

71) 국방부 제출자료 (2018.2.)

- 등의 국회와의 공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10건이 있었음
- 이 중에서 개별 의원이 아닌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받은 경우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경우 한 건이었음(2016.4.1.)

라. 국회의 관여

- 국회의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바탕으로 국회가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은 비준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방법임. 제1차에서 10차까지의 국회 심의과정을 보면 전 회차에 걸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단 한건도 비준이 거부된 사례는 없었음([표 15] 참조)
- 다만, 초기에는 대체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제5차 분담협정 심의 때부터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검토가 진행되었음
- 전체 10회 중 5회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는데, 국회가 조약의 비준동의 과정에서 의사를 개진하는데 부대의견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 본회의에 보고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비준반대가 개진 된 경우는 1건 밖에 없었음

[표 15] 제1차 -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국회 심의 현황

회차	원안가결	대체토론	부대의견	비준 반대 의견 유무
제1차	○			
제2차	○			
제3차	○		○	
제4차	○			
제5차	○	○	○	
제6차	○	○		
제7차	○	○	○	
제8차	○	○		○
제9차	○	○	○	
제10차	○	○	○	

자료: 제1차 - 제10차 분담협정 심사보고서 바탕으로 필자 정리

IV. 정책적 시사점

1. 증액요구에 대한 사전 전략 수립 및 대응

- 이상에서 제1차-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동안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한미동맹 유지를 위한 핵심적 사안이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치로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와 최소한의 부담을 원하는 국내 여론을 모두 만족시켜야하는 어려운 문제임⁷²⁾
- 따라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해 사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우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가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충분히 인식시켜야 할 것임
- 즉, 그동안 방위비분담률 산정에서 제외되었던 우리의 직·간접적 지원비용 및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대한 우리의 지원 등을 방위비분담의 틀 안으로 포함하여 한미동맹을 위한 우리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미국 내에서 동맹으로서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인사들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국회 내에는 ‘한·미의회외교포럼’이 설립되어 방문·초청외교 및 컨퍼런스 참여 등 공동행사를 통해 국회차원의 외교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72) 박원근,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쟁점과 대응방안은?」, 『세종연구소 선정 2018 정세전망』, 2017.12.21.

이렇게 정부 간 외교 외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외교활동을 통해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기여에 대해 널리 알리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의회는 대체적으로 동맹의 가치, 특히 한미동맹의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행정부에 의한 급작스러운 노선 변경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외에도 체계적인 방위비분담을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국회의 민주적 관여 강화를 통해 방위비분담금 결정 및 집행과정을 통제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2장과 3장에서 살펴보고 있음

2. 방위비분담 관련 제도 개선

- 방위비분담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방위비분담액의 결정 및 집행이 더욱 더 투명해짐에 따라 방위비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매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받을 때 총액의 증가폭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는 것과 함께 분담금 증액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우리가 기 지급하고 있는 직·간접 비용들과 향후 부담하게 될 비용들이 방위비분담금 산정에서 모두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총 비용과 공식적인 통계자료 구축, 방위비분담률 산정방식에 대한 합의를 통해 앞으로의 분담금 협상 때마다 반복

적으로 갈등을 겪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방위비분담금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현물지원 원칙이 거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도 남아있는 미군특수시설 건설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향후 협상에서도 현물지원 원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셋째, 방위비분담금의 소요형 전환과 관련하여 장·단점이 있겠으나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고, 방위비분담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요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헌법」 과 「감사원법」 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를 주장하는 의견들을⁷³⁾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다만, 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임⁷⁴⁾
- 넷째, 협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어떤 것이 낫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다만, 원칙적으로 협정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유효기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3)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에 대한 법안소위원회 부대의견

74) 찬성하는 측은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국방비에 포함되므로 「헌법」 제99조의 감사원의 세입·세출검사와 보고권 및 「감사원법」 제21조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는 조항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함. 이에 반대하는 측은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정부 회계에 넘어간 것이므로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또한 감사원 훈령인 「공익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제3호에서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와 제13조에 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각하 또는 기각하도록 명시되어있으므로 이 또한 감사 불가능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음

- 다섯째, 제10차에 이르는 방위비분담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제도적 개선이 상당부분 진전되어 한미 간 협의, 한국의 참여 및 집행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다만, 향후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여섯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SOFA 개정 등과 연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개선이 동시에 진행된 것과 같이 환경오염 부담주체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SOFA 개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국회의 민주적 관여 강화

- 그동안 제10차까지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해오면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왔으나,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았음
-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민주적 관여를 강화하는 형태로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음

가. 조약체결절차법(안) 마련

- 국회의 실질적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협정의 체결 및 집행에 관련된 제정법을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현재 우리 국회는 제한된 수준의 정보를 공유 받고 비준동의안에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정도로 의견을 투입하고 있음
 - 예를 들면, 국회는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이행약정」에 규정된 정보공유증진 조항에 따라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의 회의결과와 관련 보고서를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고받을 수 있음

- 이 외에 「헌법」 제62조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의 보고나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대정부질문(「국회법」 제122조의2)이나 긴급현안질문(국회법 제122조의3), 국무총리 등에 대한 출석요구(「헌법」 제62조제2항) 등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의견을 개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그동안 국회가 조약에 대한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를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고, 이를 위한 입법안도 지속적으로 발의되어왔음. 20대 국회 현재까지 관련 법률안의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음 ([표 16] 참조)
 - 이 중 2012년 1월 17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동 조약은 제1조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을 밝히고 있음
 - 이에 따라 동 조약은 정보의 공개(제4조), 보고 및 서류제출(제5조),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및 보고(제6조), 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제10조), 협상결과의 보고 등(제12조), 비준동의의 요청 등(제13조),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제15조) 등 통상조약의 체결, 추진, 및 이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국회의 민주적 관여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한편, 조약 체결 및 비준절차에 대한 일반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기 제출된 법안들은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협상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되

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음

□ 따라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및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참조, ‘방위비분담에 관한 특별법’ 또는 ‘조약의 체결에 관한 일반법’ 제정을 통해⁷⁵⁾ 방위비분담협상 또는 집행 과정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방위비분담금의 제정, 집행, 종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고 국회의 민주적 관여를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예를 들면, 동 제정법에 방위비분담금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방위비분담금 관련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할 것, 국방부가 정기적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또는 외교통일위원회에 방위비분담금 집행 상황 및 미국과의 협의내용 등에 대해 보고하여 국회가 집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국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의무 등을 포함할 것 등을 규정하여 방위비분담금의 체결 및 집행에 있어 국회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다만, 군사보안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은 필수이므로 비밀엄수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임⁷⁶⁾

75) 이러한 법률 제정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침해하지 않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과 통상조약의 경우 그 특수성이 있으나 그와는 다른 모든 조약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법 제정의 경우 정보 유출의 위험이나 과도한 행정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음. 따라서 특별법이나 일반법이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방위비분담금협정의 특수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비밀엄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16] 조약체결절차법(안) 추진 경과

연도	내 용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민주자유당 사회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입법의 하나로 조약체결절차법이 추진되었고, 외교부 조약국이 가칭 「조약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내부문서로 작성한 바 있음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조약국에서 2004년 정기국회 이전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을 세운 바 있음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 •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통상협정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협상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이영애 의원 대표발의) • 「통상절차법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자료: 「조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검토 보고서」,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8.2., p.13.

나. 국회의 예산심사 전 합의안 제출

-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 이후 계속해서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이 늦게 제출되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비준동의안 통과가 국회의 예산심사 이전에 완결되어, 방위비분담금 확정 예산이 반영된 국방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미국 측에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절차의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의 협의를 통해서 “차기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협의”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 제5조는 “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근거하여 합의된 절차를 거쳐 각 연도에 선정되었으나 협정 종료 시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을 계속 이행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당사국은 합의를 통해 현 방위비분담협정 종료 이전에 당사국의 국내적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차기 방위비분담협정을 위한 대표를 지명 및 협상 개시를 시작하여야한다”와 같은 강제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다. 정보 공유 강화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이행약정」 항목에서 ‘정보 공유 증진’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이 제도가 빈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이행약정」의 제6절은 “한국 국방부는 항목별 배정액에 대한 방공위 토의 결과를 대한민국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제1항 나) 및 “한국 국방부는 상기 보고서 및 그 밖의 정기 집행 보고서상의 정보를 군사 보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제1항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차기 협정에서도 이를 유지하고, 이를 근거로 국방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국내적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예를 들면, 국방부가 정기적 보고해야할 의무 또는 관련 위원회가 보고를 받아야할 의무와 절차를 관련 법률에 규정할 수 있을 것임

라. 국민 의견 수렴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 강화

- 방위비분담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특성상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사회와의 공동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첫째,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할 것임
 - 예를 들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민 누구든지 정부에 통상협상 또는 조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법 제7조에는 공청회의 개최를, 제14조에는 설명회의 개최를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약의 주요사항을 설명·홍보하는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와 유사한 항목을 방위비분담금 관련 제정법에도 규정하여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국민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 차원에서 결의안을 활용할 수 있음
-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현안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현하고 일정한 행동을 촉구”할 수 있으므로,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의사를 총합하여 결의안을 통해 표현하여야 할 것임⁷⁷⁾
 - 다만, 실제 결의안이 발의되어도 그 사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지 않거나,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그 효과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각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당시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015854, 제안일자 2018.10.4.)이 제출되었고,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최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023776, 제안일자 2019.11.4.) 이 제출되었으나 의결되지는 못하였음
- 셋째, 국회차원에서 민간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공동협력 데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위비분담방안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과 국내 여론을 다양한 형태로 정부와 미국 측에

77) 정민정·최정인, 「국회 대외정책 관련 결의안 채택의 의의와 효과성 강화 방안」, 『이슈와 논점』 제129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4.3.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국회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이의 결과물을 홍보하고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임

V. 요약 및 결론

-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주로 시설과 부지 등 간접적 지원을 해왔던 한국은 1991년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방위비를 분담해왔음
- 1991년부터 총 10차에 걸쳐 방위비분담협정이 체결되는 동안 방위비분담을 위한 제도는 초기에 비해 제도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양국 간에는 늘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주로 방위비분담금의 증액과 제도개선 그리고 국회의 민주적 관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져왔음
 - 구체적으로 첫째, 방위비분담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분담금 증액과 산정방식의 합의, 분담금 증액 관련 쟁점들, 분담금 증액률의 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둘째,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방위비분담금의 결정방식, 방위비분담금의 지급방식, 유효기간, 협정의 제도개선 관련 논의, SOFA 개정 등과의 연계 등의 내용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음
 - 셋째, 우리 국회의 민주적 관여와 관련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제한, 협정의 유효기간, 정보공유 문제, 국회의 관여문제가 논의되었음
- 이 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제1차부터 제10차까지의 방위비분담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함
 - 첫째, 지속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

둘째,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점검하여 방위비분담금 결정 및 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 셋째, 국회의 민주적 관여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시행할 것임

-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방위비분담금의 협상·체결·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조약체결절차법(안) 마련, 국회의 예산심사 전 합의안 제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국회와의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이 있음

참고문헌

- 국방부, 「사드(THAAD) 바로알기」, 국방부 정책자료집
- 김도희,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및 쟁점」, 「입법·정책보고서」, Vol.20, 국회입법조사처, 2018.
- 박원곤,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쟁점과 대응방안은?」, 『세종연구소 선정 2018 정세전망』, 2017.12.21.
- 박휘락, 「주요 미군주둔 국가(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연구」, 『국회에 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13.
- 백재옥, 「일본의 방위비분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국가전략』 제23권 제3호, 2017.
- 정민정·최정인, 「국회 대외정책 관련 결의안 채택의 의의와 효과성 강화 방안」, 『이슈와 논점』 제129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4.3.
- 홍종현,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이행합의 개정을 위한 법제분석 지원」, 『KLRI ISSUE PAPER 14-21-④』, 한국법제연구원, 2014.
- Heo, Uk and Terence Roehrig, “Development Power Theory: The South Korean Case,” *Pacific Focus* 33(1), 2018.
- Chanlett-Avery, Emma et. al. *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L33436, 2019.10.1.
-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2003.7., II-5쪽 참조
- Lostumbo, Michael J. et al., “Host-Nation Support and U.S. Payments to Other Countries,” in *Overseas Basing of U.S. Military Forces: An Assessment of Relative Costs and Strategic Benefits*, 131-66. RAND Corporation, 2013
- Olson Jr, Mancur, and Richard Zeckhauser, *An Economic Theory of Alliances*. California: The Rand Corporation, 1966.
- Snidal, Duncan, “The Limits of Hegemonic Stability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39(4), 1985.

-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 (1991.2), 외교통일위원회
-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 (1993.12.), 외무통일위원회
-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 (1995.11.), 외무통일위원회
- 「제6차 방위비분담협정 검토보고서」 ,(2005.6.)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 (2007.3.),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제8차 분담협정 심사보고서」 (2009.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제9차 분담협정 심사보고서」 (2014.4.), 외교통일위원회
-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검토보고서」 (2019.3.),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부소관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안 검토보고서」, 국방위원회, 2019.11
- 「우정 200,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다-제200차 소파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외의 개최-」, 외교부 보도자료,
2009년 12월 11일자
-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 외교부 보도자료, 2014년 1월 12일자
- “국회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의결, 무책임하다”, 오마이뉴스, 2019년 4월 8일자
(최종검색일: 2019.12.5.)
- “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 50억 달러 방위비인상에 대항카드 될까”, 중앙일보,
2019년 9월 1일자(최종검색일: 2019.12.5.)
- “주한미군기지 4곳 오늘 즉시 반환…용산 기지도 반환절차 돌입,” KBS NEWS,
2019년 12월 11일자(최종검색일: 2019.12.12.)
- “미 요구한 미군 순환배치 비용 1조원 육박..정찰기-사드도 변수,” 동아일보, 2019
년 12월 20일자(최종검색일: 2019.12.22.)
- “Trump’s demand Seoul pay for THAAD will test ties as Moon presidency
looms,” Reuters, 2017.4.28.(최종검색일: 2019.12.16.)
- “Trump hikes price tag for US forces in Korea almost 400% as Seoul questions
alliance,” CNN, 2019.11.15.(최종검색일: 2019.12.)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1. 제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은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에 따라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노무비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비를 일부 분담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체결되었음⁷⁸⁾
-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은 1991년 1월 25일에 서명되고, 1991년 2월 21일에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전문과 4개조로 구성되었음
-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전문에 제정 이유를, 제1조에서 경비부담의 범위를, 제2조에서 한국정부가 부담 액수를 결정하고 통고할 것을, 제3조에서 협의체로서의 합동위원회를, 그리고 제4조에서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 제2조에서 한국정부가 부담 액수를 결정하고 미국 정부에 통고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최근에 체결된 방위비분담협정들과 달리 본문에 결정된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서는 합동위원회를 두어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이하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1991.2.), 외무통일위원회, p.2

나. 국회의 심의⁷⁹⁾

-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은 1991년 1월 26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1991년 2월 6일 제152회 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협정문의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4개의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나, 대체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⁸⁰⁾
 - 질의 1: 협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노무비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답변: 지금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개정조항이 바로 법적근거임
 - 질의 2: 한·미간 SOFA를 미국이 타 국가와 체결한 SOFA와 비교해 볼 때 불평등한 협정이 아닌가?
 - 답변: 한·미간 SOFA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이 타 국가와 체결한 SOFA와는 같이 비교할 수 없음
 - 질의 3: 우리가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미국 측이 과도한 요구를 해올 것이 아닌가?
 - 답변: 부담할 경비의 규모와 종류는 우리가 정하여 미 측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임

79)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1991.2.), 외무통일위원회, p.7

80) 이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된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질의와 답변, 대체토론, 부대의견은 정리·재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내용의 왜곡을 막기 위해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원문 그대로를 별도의 직접 인용 표시 없이 옮겨왔음을 밝히며, 이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1차 -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의 심의에 모두 적용됨

- 질의 4: 우리가 부담 할 수 있는 다른 경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 답변: 지금껏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부담한 미항공기정비비 등과 같은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기 위한 것임

2. 제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1993년 11월 23일에 서명된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은 1993년 12월 17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1994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2년이었음
-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전문과 7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에는 담겨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 첫째, 제1조에서 경비부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 제1조가 한국인 고용원 고용 경비의 일부 부담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일부” 부담 대신 “공정한 부분” 부담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신 “양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로 변경되었음
- 둘째, 제2조는 1991년 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1995년까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원화지출경비의 3분의 1수준으로 분담금을 증액할 것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원화지출 경비를 미군의 급여와 기타 인

건비를 제외한 현지 발생경비로 정의하였음

- 셋째, 제4조는 방위비분담금 지출 분야 배정을 위해 양 당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 이를 기존의 합동위원회 및 이번 협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함께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는 협의체로 규정하고 있음
- 넷째, 제7조에서는 상호합의하에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음

나. 국회의 심의⁸¹⁾

-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은 1993년 12월 8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1993년 12월 15일 제165회 국회(정기회) 제9차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협정문의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 질의 1: 새 협정 제1조에서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인건비와 한미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의 “일부”(a part)가 “공정한 부분”(an equitable part)로 변경됨으로써 우리의 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 답변: 최근 미국이 우방국의 방위비 부담 노력을 설명할 때 통상 “공정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81)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1991.2.), 외무통일위원회, p.7

3. 제3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은 1995년 11월 24일에 서명되고, 1995년 11월 29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1996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었음
- 전문과 6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처음으로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협정문에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동안의 매년의 증액된 총액도 미리 확정하여 명시하고 있음
 - 제2조는 1996년도의 분담금을 3.3억불(2,475억 원)로 명시하고, 유효기간 3년 동안 전년도의 분담금을 기준으로 10% 증액되어 1997년도에는 3.63억불, 1998년에는 3.99억불이 될 것임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조에서는 분담금의 지급방식으로 현금과 공동사업을 제시하고, 현금 지원분은 합의각서 최종 서명일의 시장 환율 기준 미달러화로 지급할 것과 매년 현금분담은 3월 1일 또는 그 이전과 7월 1일 또는 그 이전으로 2회 균등분할 지급될 것을 명시함
 - 1996년도 분담금은 3분의 2는 현금으로, 3분의 1은 공동사업으로 지급되며, 1998년도까지 분담금의 4분의 3은 현금으로, 4분의 1은 공동사업으로 지급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1997년 말 발생한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해 한미 양국은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 개정에 합의하였으며, 1998년에 지급할 총액인 3.99억불 대신 “1.75억불과 2천33억2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 또한, 1998년은 예외적으로 미 달러화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항공기 및 지상장비, 합의각서에 의거한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탄약정비활동, 차량지원 및 공동사용기지의 전쟁예비물자장비정비 지원 사업에 한하여 지원금은 1미불당 907.6원의 환율로 정산”할 것을 규정하였음

나. 국회의 심의⁸²⁾

-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은 1995년 11월 24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1995년 11월 29일 제177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협정문의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고, 원안에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의결되었음
 - 질의 1: Aspin 미 국방장관도 상원에서 한국이 동맹국 중 가장 많이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는 바, 10% 인상이지만 많다고 보며, 부담의 신축성 여지가 없음
 - 답변: 종전 원화발생경비의 1/3 부담으로 할 경우 향후 보다 많은 부담을 하여야 하나, 이번 협상에서는 근로자 인건비의 인상분등을 고려한 불가 인상분의 반영 등으로 최소화하여 우리에게 유리하게 타결하였음
 - 질의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부대의견⁸³⁾ 중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좀 더 강하게 표현할 필요 있음

82)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1995.11.), 외무통일위원회, p.7

83) 당시 외무통일위원회 강희복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이 협정에 의한 방위비분담을 집행함에 앞서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에 관한 한·미간의 합의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함”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하였음(「제3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1995.11.), 외무통일위원회, p.5)

- 답변: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논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SOFA 개정에 임할 것이며, “합의”를 “교섭진행상황”으로 수정요망
- 부대의견: 정부는 이 협정에 의한 방위비 분담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에 관한 한·미간의 교섭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이 개정내용에 우리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제4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은 1999년 2월 26일에 서명되고, 1999년 3월 8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후, 1999년 1월 1일로 소급·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었음
- 전문과 5개조로 구성되었으며, 1998년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에서 약속된 면세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이 협정은 협정의 집행과 동시에 승인되는 별도의 ‘이행지침’(implementation instruction)에 따라 이행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제2조)
- 제2조는 1999년의 분담금을 1억 4,120만미불과 2,575억 원(전체 4,411억 원)으로 명시하고, 2000년 및 2001년의 분담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국민총생산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⁸⁴⁾
 - 또한, 분담금의 현물+현금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인건비는 2회 균등 지

84) 제2조에 따르면 “전년도 9월 30일까지의 12개월간에 대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 및 한국은행의 실질 국민총생산(원화기준)의 변동을 반영하여 전년도 분담액을 조정”하여 결정함

급하고(3월 1일 또는 그 이전과 7월 1일 또는 그 이전), 군사건설비는 당해 연도 3월 1일 및 차년도 3월 1일에 50%씩 균등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2조 하단은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또는 세후액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어떤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액은 비용분담 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미국 측이 제기한 과세로 인하여 협정상 약속된 금액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해소하고 있음
- 제4조는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 “합동위원회”와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규정하고 지난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때 추가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제외하고 있음

나. 국회의 심의⁸⁵⁾

-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은 1999년 2월 27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1999년 3월 4일 제2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 대체토론, 찬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됨

85)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 (1999.3.), 통일외교통상위원회, p.9

5. 제5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02년 4월 4일에 서명되고, 2002년 4월 19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02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었음
- 전문과 5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이 협정은 “이 협정과 동시에 시행되는 당사국의 관계 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 (implementation agreement)에 따라 이행될 것”이라고 명시됨(제2조)
 - 제1조에서 방위비분담금의 구성항목으로 “인건비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의 4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제2조는 2002년 분담금으로 5,880만 미불 및 5,368억 원(6,132억 원)을 정하고 있으며, 2003년 및 2004년의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의 8.8퍼센트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만큼의 증가금액을 전년도분담금에 합산하여 결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건비 분담금은 이전과는 달리 3회씩 균등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군사건설비는 당해 연도 3월 1일 및 차년도 3월 1일에 50%씩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제2조)
 - 당해 연도의 3월 1일이나 그 이전, 5월 1일이나 그 이전, 7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인건비 분담금을 지급하도록 함
 - 또한 분담금의 현금+현물구성은 그대로 유지되며, 총 분담금에 대한 원화의 비율은 88퍼센트임

- 구체적으로, 인건비분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원되고,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의 일부는 현물로 지원됨(제2조)

□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Implementation Arrangement for Special Measures Agreement)은 항목별 자금배분현황 제공, 분담금 계산, 원화-달러화 혼합비율 및 항목 배분의 원칙, 그리고 방위비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회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첫째, 제1항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분담금의 항목별 자금 배분현황을 한국 국방부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둘째, 제2항은 분담금의 계산방식과 88퍼센트는 원화, 12퍼센트는 미 달러화 지급 원칙을 확인하고 있음

○ 셋째, 분담금의 항목 배분과 관련하여, 분담금이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 전체의 71%를 넘지 않아야”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군사건설비)의 경우 분담금의 5%는 현물로 지급되고, 이 경우 한국 국방부는 미 극동공병단이 승인한 계약자를 활용하여야 함. 또한 현물지원을 위한 세부사항들은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규정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주한미군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중요하다. 주한미군은 환경 보호를 참작한 새로운 시설을 건축하는 데 군사건설비를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반면,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대부분 현물지원이며 설계비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별도의 단일 이행합의서에 의거하여 집행함

- 군수비용분담도 현물지원 사업이며, “탄약저장 및 관리, 수송, 장비의 수

리 및 정비, 철도차량을 포함한 비전술차량과 같은 분야의 군수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함. 이 역시 별도의 집행합의서에 의해 집행됨

- 넷째,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는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국장과 주한미군사 정책기획참모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어느 일방의 요청 시 회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나. 국회의 심의⁸⁶⁾

□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02년 4월 10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2002년 4월 16일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의과정에서의 대체토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질의 1: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가?

- 답변: ‘방위분담특별협정’의 「이행약정」에서 주한미군기지의 오염과 관련해서 환경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음

- 질의 2: 1991년 이후 2002년까지 국방비증가율은 119%인 반면, 방위비분담금 증가율은 국방비증가율과 동일한 수준 이내여야 할 것 아닌가?

- 답변: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이 높은 것은 우리의 경제력 향상에 맞추어 분담금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랍

- 질의 3: 미군 총주둔비용의 구체적 내역 파악여부와 구체적 소요 내역을 파악한 후에 총 분담금 규모를 협상할 용의는?

- 답변: 총분담비용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소요내

86)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2002.4.), 통일외교통상위원회, p.7

역 파악이후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상방식은 우리의 분담금을 줄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 질의 4: 금년 1월 1일 발표되는 협정 비준동의안을 늦게 제출한 경위는?
 - 답변: 향후에는 비준동의안이 적시에 제출되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임
- 의견 5: 비준동의안 제출시기가 늦은 것은 문제가 있으나 사안의 급박성을 감안하여 의결하도록 하되 부대의견을 붙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대체토론에서 제안된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 정부는 향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담금의 연도별 증가율이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부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러한 협정비준동의안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국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제6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2005년 6월 9일에 서명된 제6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05년 6월 29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05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2년이었음
- 제6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전문과 5개조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협정 이행을 위한 별도의 「이행약정」을 포함하고 있음

- 첫째, 제1조에서 분담금은 인건비 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항목으로 구성됨을 명시하고 있음
- 둘째, 제2조는 2005년의 분담금은 6,804억 원이며 유효기간 내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음
 - 인건비는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과 동일하게 3회씩 균등금액으로 지급하나, 당해 연도의 4월 1일이나 그 이전, 6월 1일이나 그 이전, 8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
- 「이행약정」에서는 분담금의 전면 원화 지급원칙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 이행을 위한 「이행약정」과 같이 “건설공사가 미합중국군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계약은 대한민국 시공회사에게 주어 진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나. 국회의 심의⁸⁷⁾

- 제6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05년 6월 10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2005년 6월 27일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 대체토론을 통해 분담금 감액 규모의 적절여부, 동의안의 지연제출로 인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침해 문제, 동의안 유효기간의 적절성 문제, 동의안에 대한 정부 측의 충분한 사전 설명 필요 등이 지적되었음

87) 「제6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2005.6), 통일외교통상위원회, p.8

7. 제7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2006년 12월 22일에 서명된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07년 4월 2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07년 4월 2일에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2년이었음
-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전문과 5개조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협정 이행을 위한 별도의 「이행약정」을 포함하고 있음
 - 제2조는 2007년 분담금 7,255억 원과 2008년 분담금 산정방식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2008년 분담금은 2006년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 만 큼의 증가금액을 전년도 분담금에 합산하여 결정함
 - 「이행약정」에서는 군사건설 분담금 총액의 10% 또는 그 이상을 현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차 및 제6차 협정 「이행약정」에 포함되었던 “건설공사가 미합중 국군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계약은 대한민국 시공회사에게 주 어진다”는 문구는 삭제되었음
 - 동 약정 제2항의 나는 군사건설비로 이루어지는 건설계약서 사본과 분기 별 집행보고서를 한국 국방부 군사시설국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 는데, 이 때 분기별 집행보고서는 “양측이 개발한 양식”에 따라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 또한 제2항의 다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본 특별협정 하에서 기존의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을 이행하고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유의미한 프로그

램으로 남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⁸⁸⁾

나. 국회의 심의⁸⁹⁾

-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07년 1월 2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2007년 2월 22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2.22.)에 상정되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동년 3월 2일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부대의견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대체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토론 1

- 분담금 예산의 법적 근거인 협정이 비준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며, 헌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임
- 주한미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군 1인당 분담금액은 오히려 22.7%나 증가한 것은 문제임
- 분담금의 일부를 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LPP협정 위반임

○ 토론 2

- 방위비분담에 대한 국회나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협상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한미동맹의 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장기적인 정책방향 없이 방위비분담

88)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항목에서 삭제됨

89)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2005.6), 통일외교통상위원회, pp.8-11

등 각론사항을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정부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음

- 미군의 신속기동군화 등 전략적 유연성이 방위비분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할 것임
- LPP 협정에 의해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2사단 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이며, 아울러 LPP 협정 당시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던 정부 당국자가 이제 와서 분담금은 미국 예산이므로 용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임

○ 토론 3

- 매해 협상이 지연되어 예산 통과 후 비준동의안이 상정되는 관행을 시정해야할 것임

○ 토론 4

- 한미 분담협상의 집행체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분담에 대한 포물러를 만들어 그에 구속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야할 것임
-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주둔군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동의안 제출의 지연으로 인해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법적인 문제는 가급적 빨리 시정해야할 것임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재협상의 여지가 희박하고, 비준동의 지체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고려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시정할 것,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을 집행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매번 협상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침해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반복되는 바,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함은 물론 미국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요구함
- 정부는 종래의 입장을 반복하여 방위비분담금이 기지이전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하였는바, 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이하 ‘LPP’)이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으로 기지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함은 물론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움으로 미 측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현행 분담체제의 투명성 및 책임성과 관련하여 항목별로 편성된 금액을 미군이 재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바, 미국 측의 집행보고서에 대한 감사절차 등이 필요함을 지적함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의 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충당을 이유로 분담금을 451억 증액한 정부 측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한 바, 인건비 집행 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함

□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 정부는 매번 협상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시정할 것
- 방위비분담협정과 LPP는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 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8.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2009년 1월 15일에 서명된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09년 3월 2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09년 3월 5일에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5년이었음
-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전문과 7개조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협정 이행을 위한 별도의 「이행약정」과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이하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on In-kind Contribution of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under the Agreement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SOFA)를 체결하였음
- 제1조에서 기존 항목인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통합되어,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만으로 분담금이 구성됨을 명시하고 있음
- 제2조에서는 2009년의 분담금은 7,600억 원이며 유효기간 5년 동안 매년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하여 연도별 분담금을 결정하되, 물가상승률은 4%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음
- 제3조에서 인건비는 현금지원이고,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지원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과 현물로 지원하되,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현물지원으로 전환되며, 2011년부터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면 현물로 전환되도록 함

- 전면 현물화 이후 설계 및 시공감리 비용은 해당 사업 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됨
- 분담금에 대한 면세조항은 제4조로 독립·규정되었고, 제5조에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근거하여 합의된 절차를 거쳐 각 연도에 선정되었으나 협정 종료 시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을 계속 이행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음
-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는 설계 및 시공감리 비용은 총 사업비의 12%를 차지하고, 현금으로 지급됨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양국은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수립할 것과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할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됨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9항에서는 현물지원 절차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연례 점검 체계를 수립하고,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의하고, 현금제공을 포함하여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군사건설지원의 단계적 현물화를 위해 2009년에는 30%, 2010년에는 60%,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88%를 현물로 제공하기로 함

나. 국회의 심의⁹⁰⁾

-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09년 1월 19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2009년 2월 10일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

90)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2009.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pp.35-38

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2009. 2. 23.)·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5.)에 상정·가결되었고, 동년 2월 26일 제6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체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토론 1

-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것과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4%로 제한한 것은 성과로 평가함
- CDIP를 군사건설 항목에 통합한 것은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업 사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총액 위주의 기계적 인상 방식보다는 협상조건에 정보 자산, 군사력 증강의 컨디션 등의 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토론 2

- 방위비분담금을 LPP 사업에 사용한 것은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한 것임
- 교환각서 제9항에 현금지원 여지를 남긴 것은 현물지원 체제 전환을 규정한 상위 협정에 어긋날 여지가 있음
- 5년의 유효기간으로 인해 비준동의 시 향후 5년 동안 방위비분담 협정 내용의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비준동의에 반대함

○ 토론 3

- 군사건설비의 단계적 현물지원체제로의 전환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향후 협상에서는 소요에 기초한 자금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협정문에 소요 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5년의 유효기간은 국회의 통제권을 제한하고, 주한미군 감축 및 신속기동군으로의 전환에 따른 분담금 조정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음
-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활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방위비분담금을 LPP 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 협정 비준동의안 제출의 지연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정이 필요함
- 방위비분담금을 LPP 사업에 사용토록 한 사전합의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함

○ 토론 4

-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LPP, 방위비분담협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해 고려하여야 함
- 방위비분담금을 LPP 사업에 사용토록 한 사전합의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함
- 방위비분담협정과 LPP 협정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LPP 협정의 개정이 필요함
- 방위비분담금 중 LPP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명확한 추정이 필요함

○ 토론 5

- 방위비분담금을 LPP 사업에 사용토록 양해한 2001년 NSC 회의기록을 의원들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함

9.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2014년 1월 11일에 서명된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14년 4월 16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14년 6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5년이었음
-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전문과 7개조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협정 이행을 위한 별도의 「이행약정」,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이하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on System Improvements fo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SOFA), 그리고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이하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on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SOFA)를 함께 체결하였음
- 제1조는 방위비분담금 항목을 명시하고, 이 협정의 이행은 「이행약정」에 따른다는 점과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채택·발효를 규정하고 있음
- 제3조는 인건비 분담은 현금,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그리고 군수건설비 지원은 현물+현금 지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가 채택됨을 명시하고 있음
- 연도 말 미집행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나,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미집행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이 신설·추가되었음

- 한미 양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방위비분담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하고, 분담 항목별 배정 및 소요 검토에 대한 조정 강화, 군사건설 지원의 실질적 협의 체제 수립, 군수비용 분담 사업의 업무방식 및 절차 개선, 인건비 분담에 관한 투명성 제고, 정보공유 증진 분야에서 제도적 개선안을 도출하였음 ([표 1] 참조)
 - 특히, 동 교환각서의 제5항은 정보 공유 증진을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협의결과를 국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 및 그 밖의 정기 집행 보고서상의 정보를 군사 보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은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체결되었던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음
 - 다만, 제9항에서 단계적 현물지원을 설명하는 문구가 삭제되고, 현물지원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제공’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이행약정」은 나항에서 “특정 군사 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인 현금의 추가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이행약정」의 가항에서 주한미군사가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과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혹은 그러한 고용이 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종료하여

서는 아니 된다. 군사상 필요로 인하여 감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의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인건비의 전체규모가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전체의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표 1]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제도개선 요약

구분	개선 내용	기대효과
1. 분담 항목별 배정 및 소요 검토에 대한 조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배정액 추산에서부터 결정까지 한미 간 공동으로 철저한 검토·평가 실시 • 필요시 국방장관-주한미군사령관가 추가 심의 실시 • 우리정부의 예산 편성주기를 감안 배정액 결정 시점을 한 달 정도 앞당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담금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는지에 대한 검토·평가 가능 • 한미 간 협의 결과가 반영된 예산안 국회 제출
2. 대한민국 지원 건설의 실질적 협의 체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측이 사업 목록만을 사업설명서와 함께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제출, 이를 기초로 1년간에 걸쳐 실무급-장관급의 협의를 통해 구체 사업 계획을 사실상 공동 수립(필요시, 국방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간 이견 해결) • 전년도-현행년도-추후년도의 건설 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미측이 중장기 건설사업 계획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 투명성 확보/이월액 등 집행 부진문제 해소에 기여 • 중장기 건설사업도 한미 간 협의
3. 군수비용 분담 사업의 업무방식 및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 분야의 상설협의체를 신설, 행정절차 간소화, 발주 및 대금 지불 추적·모니터링 도입 등 구체조치를 마련해나가기로 합의 • 군수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계약 업체”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무늬만” 한국업체의 참여 차단
4. 인건비 분담에 관한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담금 배정액 협의 시 인건비 분야부터 우선 검토 및 평가 • 보다 상세한 인건비 집행 내역 제공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투명성’ 확보
5. 정보 공유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간 항목별 배정 검토 결과 국회 보고 • 「방위비분담금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 「현금미집행액 상세 현황보고서」를 새로이 작성, 동 보고서 및 여타 집행결과 보고서 내용을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 투명성’ 확보

자료: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 (2014.4.), 외교통일위원회, p.13

나. 국회의 심의⁹¹⁾

-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14년 2월 7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2014년 2월 21일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4. 2. 24.) ·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4. 4. 15.)에 상정,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2015.4.15.)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음
 - 정부는 주한 미군의 평택기지이전사업 종료 시점에 동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 정부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5년)과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 비준 동의 시점 이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할 것
 -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향후 한·미간 사전 협의를 통해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국회에의 예산안 제출시점 이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할 것

91)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2014.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pp.30-31

10.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2019년 3월 8일에 서명된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19년 4월 5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19년 4월 5일에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1년이었음
- 제 9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전문과 9개조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협정 이행을 위한 별도의 「이행약정」을 함께 체결하였음. 이 「이행약정」은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때 교환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및 그 ‘수정서한’과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를 대체함
 - 제 2조에 2019년의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을 명시하였음
 - 제 3조는 군사건설 건설 현금지원분은 설계와 시공감리에 사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미집행 지원분의 최소화를 위하여 절차수립을 포함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제 5조는 방위비분담협정 최초로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6조에서는 “현행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대안적 접근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새롭게 규정함
- 「이행약정」에는 그동안 제도개선 및 건설이행을 위한 교환각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류·재작성하고 있으며,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당시와 유사한 내용도 있으나 그동안 지적되어온 문제들을 새롭게 개선한 내용들도 다수 있음([표 2] 참조)

- 첫째,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당시 크게 문제가 되었던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 현금지원 가능조항을 삭제하되, 미국 측 입장을 고려하여 현물 지원 원칙을 유지하면서 비한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4절제4호 다항)
- 둘째, 현금으로 지급된 설계·감리비에서 미집행이 발생할 경우 이를 차년도 현금배정에서 삭감하는 대신 현물 지원으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미집행 현금 축적을 차단함(제4절제2호 가·다항)
- 셋째, 미집행 현물지원도 예산지출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만 이월하고, 그 외에는 연말까지 공공요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여 이월요건을 강화하였음(제5절제7호)
- 넷째, 이외에도 설계, 사업선정 등 군사건설 전반에서 한국 측 참여를 강화하도록 하였음(제4절제8호 및 제5절제5호)
- 다섯째,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규정하였던 인건비 75% 상한을 폐지하고, 전체의 75% 이상을 인건비에 사용하도록 하였음(제3절제5호)
- 여섯째, 「이행약정」 제8절에 ‘특별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합동실무단은 최소한 연 2회 소집되어, 현 방위비분담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게 됨

나. 국회의 심의⁹²⁾

-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19년 3월 13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2019년 3

92)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2019.4.), 외교통일위원회, pp.34-36

월 18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 4. 4.)에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2019.4.5.)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 외교통일위원회 대체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토론 1(천정배 위원)

- 기집행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액이 1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8.2% 증액한 것은 불합리하며, 군사시설 항목과 관련한 공공요금 지원은 미국 측의 작전지원 항목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군사시설 항목에서 비한국업체 참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인해 우리 국민과 정부 모르게 위해시설이 건설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① 주둔비 전액 부담은 SOFA 제5조 위반, ②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분담금 사용 불가, ③ 군수지원 항목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 필요, ④ 분담금 지원방식을 소요충족형으로 개선, ⑤ 분담금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원 회계감사 실행의 5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토론 2(송영길 위원)

- ① 군사건설 사업소요에 대한 평가, ② 감사원의 회계 감사, ③ 방위비 분담금의 목적 정립, ④ 소요충족형 분담 방식 전환 검토, ⑤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이상 5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토론 3(송영길, 원유철, 원혜영 위원)

- 방위비분담금 규모의 합리적 책정 여부, 미국 측의 ‘동맹국 주둔비 +50%’ 요구 보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부는 차기협상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기본취지를 살려 작전지원과 같은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SOFA 제5조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동맹기여도가 충분히 고려된 합리적인 분담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
- 둘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국가재정법」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을 환수하도록 노력할 것
- 셋째, 정부는 주한미군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를 사용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넷째, 정부는 2,884억 원 상당인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9,864억 원 상당인 미지급 현물지원분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다섯째, 정부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관련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그 동안 한·미 군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지속되어 온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
- 여섯째,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의 전환 등 방위비분담금 집행 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등임

[표 2]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제도개선 요약

구분		개선 내용	기대효과
군사건설	예외적 현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적 현금지원조항 삭제 - 설계·감리비 외 전면 현물지원 • 비한국업체 조건부 허용 - 미국 군사적 소요/ 가용현금 부족/ 상호 협의 및 합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지원 체제 강화
	설계·감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내(현금지급분) 미집행분 발생시 차년도 현금 지원분 삭감 - 삭감분은 현물지원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집행 현금 발생·누적 방지
	사업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추가사업 제안가능 • 미, 군사건설 5개년 계획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측 참여 및 권한 확대
	집행상 한측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과정 전반에 걸쳐 우리 국방부 관여 확대 	
군수비용	미집행분 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 조건부 허용 - 연내 계약완료 또는 12월 1일까지 입찰 공고된 사업만 이월 허용 - 연말까지 미집행분은 군수지원 내 공공요금으로 지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과 합치도모
	집행상 한측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사업목록 및 수정 사항 매분기 제출 • 미, 한국업체 자격 요건 증빙 서류 매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측 모니터링 강화
인건비	인건비 분담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한 철폐/75% 이상 지원 노력 의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안정성 제고
	한국인 근로자 복지·안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 상 양국 관계당국의 복지·안녕 증진 노력의무로 격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권익 보호 중요성 강조
제도개선 합동실무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건설 소요형 전환 포함, 방위비분담협정의 중장기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특별협정 개선 합동실무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사항 상시적 협의

자료: 외교부,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2019.4.), 외교통일위원회, p.14에서 재인용

입법·정책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001호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2018.03.13.	허석재
제002호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2018.05.31.	정도영 김민창 김재환
제003호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	2018.06.22.	문은희
제004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8.06.28.	류영아
제005호	현행 지방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개편방안 : 지방의회선거를 중심으로	2018.07.11.	김종갑
제006호	디지털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과제 : 전문법칙을 중심으로	2018.07.26.	조서연
제007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2018.08.08.	조주은 최진응
제008호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2018.09.21.	허민숙
제009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2018.11.15	김재환 정도영 김민창
제010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2018.11.29	김유향 김나정
제011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8.11.29	신동윤
제012호	연구개발특구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8.12.07.	권성훈
제013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개선 과제	2018.12.10.	김태엽
제014호	현행 '복지허브화' 정책의 성과 및 개선방안 -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	2018.12.11.	이만우
제015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2018.12.13.	박선권
제016호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2018.12.13.	정준화
제017호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2018.12.14.	김현정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018호	국가 주요 시설물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2018.12.14.	김진수
제019호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18.12.17.	허민숙
제020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및 쟁점	2018.12.19.	김도희
제021호	개정 한·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와 향후 과제	2018.12.20.	정민정
제022호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입증책임 전환을 중심으로-	2018.12.24.	박재영
제023호	시진핑 집권2기 중국 대외정책 결정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2018.12.27.	김예경
제024호	난민심사제도 운용실태 및 개선과제	2018.12.27.	백상준 김예경
제025호	남북 이산가족 관련 지원 정책의 실태 및 개선과제	2018.12.31.	이승현
제026호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현황 및 개선과제	2019.01.18.	김창호
제027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9.09.24.	류영아
제028호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2019.10.31.	박선권
제029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2019.11.01.	최미경 최정민
제030호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2019.11.15.	장은덕
제031호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2019.12.10	김진수
제032호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19.12.16	박재영
제033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의 점검 및 개선방안	2019. 12. 19.	김은진
제034호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19. 12. 23.	김유향 유지연 김나정
제035호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2019. 12. 24.	김영석 박준환 김대명
제036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2019. 12. 26.	이혜경
제037호	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과제 - 도로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2019. 12. 26.	구세주
제038호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권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19. 12. 27.	백상준
제039호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2019. 12. 27.	박명희

입법 · 정책보고서 Vol. 제40호

발 간 일 2019년 12월 31일
발 행 김하중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788 · 4550
인 쇄 성지문화사 (TEL 02 · 2273 · 5090)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586-5668
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1602-14

© 국회입법조사처, 2019



입법·정책보고서

주요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주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NARS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 788. 4510(代) www.nars.go.kr

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1602-14
ISSN 2586-5668



국회입법조사처